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입금 금액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1
3. 모집 예정 금액	1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5. 인수에 관한 사항	2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2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3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3
4. 집합투자업자	3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4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5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9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0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16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8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24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30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1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39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41
1. 재무정보	41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43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46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51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51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54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54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58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58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64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65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69
[별첨1] 본건 투자신탁과 관련한 이해상충의 일반적 분류	70
[별첨2] 펀드용어의 정리	84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 [주식] (투자신탁 코드 : 87056)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용어에 관한 사항은 “별첨2”의 용어풀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 예정 금액

10조좌

- 주1)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아니하고 모집예정금액까지 추가모집이 가능합니다.
- 2) 본 집합투자기구의 판매 개시 이후 당해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일정한 규모 이하가 되는 경우 등 법령 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집합투자증권은 판매 개시 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동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가.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을 기준으로 모집 및 판매됩니다
-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goldman-sachs.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모집(매입)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 (1) 기준시간(15시) 이전에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배정됩니다.
 - (2) 기준시간(15시) 경과 후에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배정됩니다.
- 주)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명 명칭)	표준코드	단축코드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	KR5312870565	87056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 종류 A	KR5312874849	87484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 종류 C1	KR5312874856	87485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 종류 C2	KR5312961083	96108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 종류 C3	KR5312961091	96109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 종류 C4	KR5312961117	96111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 종류 C5	KR5312961125	96112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 종류 CI	KR5312874864	87486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 종류 CE	KR5312874872	87487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주식] 종류 N	KR5312874880	87488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8.09.01	최초설정
2008.11.26	집합투자규약 변경(장기주식형 세제 지원에 따른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변경)
2008.12.01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허진욱 → 김민구)
2009.03.12.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민구 → 허진욱)
2009.04.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 [주식]로 명칭 변경
2011.02.01.	자투자신탁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허진욱 → 윤규현)
2013.02.08.	자투자신탁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윤규현 → 오선희)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226 흥국생명빌딩 19층 (110-786) (대표전화 : 02-3788-14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당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

(2012.08.31 현재)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오선희	52세	상무	[0]	[0]	ANZ은행 1983.3.~1990.12. 신용분석 동양증권 1991.3.~1996.9. 리서치 Nomura Asset. 1996.10.~1999.8. 주식운용 Alliance Capital 1999.9.~2002.4. 주식운용 Standard Life Investment 2002.5.~2007.5. 주식 운용 골드만삭스증권 2007.6.~2007.10. 리서치 골드만삭스자산운용 2007.11.~현재 주식운용

주 1)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개수 : [해당사항 없음]

주 2) 모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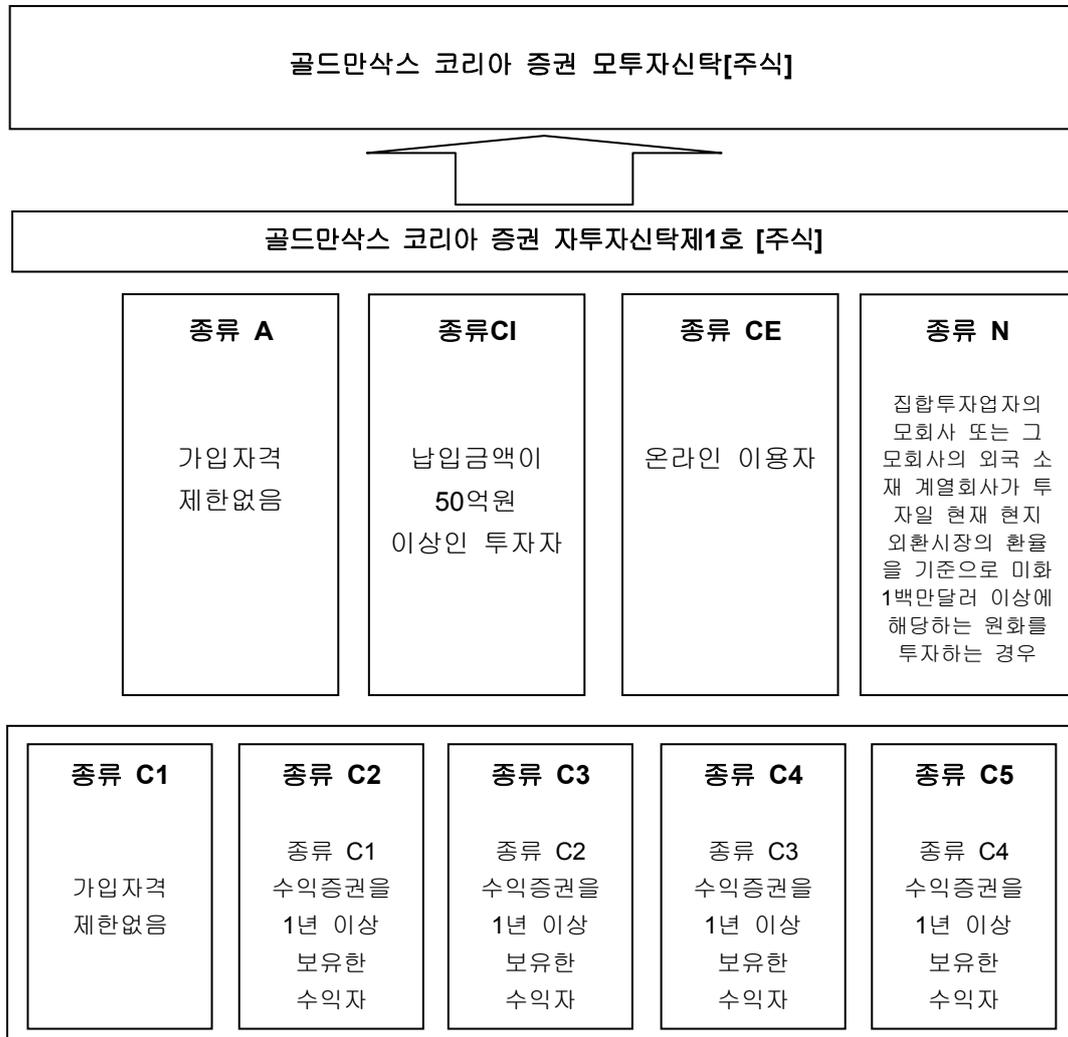
당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

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허진욱	2008년 9월 1일 ~ 2008년 11월 30일
김민구	2008년 12월 1일 ~ 2009년 3월 11일
허진욱	2009년 3월 12일 ~ 2011년 1월 31일
온규현	2011년 2월 1일 ~ 2013년 2월 7일
오선희	2013년 2월 8일 ~

주1) 최초설정일 이후 책임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주식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써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한아이타스 제공)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종류 A	제한 없음	최초설정일		
		2008.09.01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0% 이하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0.7500
			판매회사보수	1.0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00
			총보수	1.7900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종류 C1	제한 없음	최초설정일		2008.09.01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0.7500
			판매회사보수	1.5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00
			총보수	2.2900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최초설정일		2010.10.18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0.7500
			판매회사보수	1.4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00
			총보수	2.1900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종류 C3	종류 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최초설정일		2010.10.18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0.7500
			판매회사보수	1.3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00
			총보수	2.0900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종류 C4	종류 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최초설정일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0.7500
			판매회사보수	1.2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00
			총보수	1.9900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종류 C5	종류 C4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최초설정일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0.7500
			판매회사보수	1.0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00
			총보수	1.7900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종류 CI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수익자	최초설정일		2010.11.29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0.7500
			판매회사보수	0.2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00
			총보수	0.9900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종류 CE	온라인 이용자	최초설정일		2008.09.03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0.7500
			판매회사보수	1.3000 (주1)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00
			총보수	2.0900 (주 2)

주 1) 종류 CE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보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기간별로 달리 적용합니다.

- 가. 2010년 10월 18일부터 2011년 10월 17일 까지 : 연 1.3000%
- 나. 2011년 10월 18일부터 2012년 10월 17일 까지 : 연 1.2000%
- 다. 2012년 10월 18일부터 2013년 10월 17일 까지 : 연 1.1000%
- 라. 2013년 10월 18일 이후 : 연 1.0000%

주 2) 종류 CE 수익증권의 총 보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기간별로 달리 산정됩니다.

- 가. 2010년 10월 18일부터 2011년 10월 17일 까지 : 연 2.0900%
- 나. 2011년 10월 18일부터 2012년 10월 17일 까지 : 연 1.9900%
- 다. 2012년 10월 18일부터 2013년 10월 17일 까지 : 연 1.8900%
- 라. 2013년 10월 18일 이후 : 연 1.7900%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종류 N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업자의 모회사 또는 그 모회사의 외국 소재 계열회사로 제한	최초설정일		2008.09.01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투자신탁보수	집합투자업자보수	0.7500
			판매회사보수	0.1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00
			총보수	0.8900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그룹 내의 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자집합투자기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 [주식]		자산총액의 90%이상 투자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가. 당해 투자신탁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은 주식형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90%이상 투자하여 장기 자본상승 달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자들은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투자 위험을 부담하며, 주식은 개별 회사의 활동 및 일반 시장 및 경제 조건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변경은 제외)은 집합 투자계약 변경을 통해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계약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 및 등록 신청서 변경등록의 절차를 거칩니다.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모투자신탁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기 자본상승 달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투자신탁은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KOSPI Index(총수익 기준)입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변경은 제외)은 집합투자규약 변경을 통해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규약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 및 등록신청서 변경등록의 절차를 거칩니다. 경우에 따라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 및 등록신청서 변경등록의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1) 당해 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의 취득한도에 관한 내용은 “나. 투자제한” 항목의 기재와 함께 이해되어야 합니다.

투자대상		취득한도	주요 내용
1	모투자신탁의 수익권	90% 이상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2	단기대출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임. 아래 “나. 투자제한” 참고	
3	양도성예금증서		
4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년 이내의 것에 한함	
5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취득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한도를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취득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의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 취득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또는 법 제191조에 따른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아래 “나. 투자제한” 참고).

(2) 모투자신탁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의 취득한도에 관한 내용은 “나. 투자제한” 항목의 기재와 함께 이해되어야 합니다.

투자대상		취득한도	주요 내용
1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	70% 이상	법 제4조 제4항의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
2	채무증권	30% 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3	자산유동화증권	3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	30% 이하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 또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5	집합투자증권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자산총액의 3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6	장내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주식연계채권"에 한함)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을 뺀 금액의 10%이하	법 제9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국채선물옵션, 통화선물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함) 및 파생결합증권(주식연계채권에 한함) 투자의 목적 : 헤지 목적
7	장외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을 뺀 금액의 10%이하	주식 및 채무증권, 통화와 관련되고 선도환거래를 포함하며 제6호에 상응하는 장외파생상품 및 금리스왑거래, 토탈리턴스왑 투자의 목적 : 헤지 목적 장외파생상품의 발행자 및 발행자의 신용등급 : A
8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대상		취득한도	주요 내용
10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1	단기대출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임.
12	양도성예금증서		
13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년 이내의 것에 한함
14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제1호 내지 제7호의 취득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한도를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취득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증권 등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상기 제1호 내지 제7호의 취득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또는 법 제191조에 따른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아래 “나. 투자제한” 참고).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당해 투자신탁

(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합니다.
- 2) 법 제191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또는 법 제191조에 따른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 (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제외합니다)하여서는 안됩니다.
- (라)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으로 당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마)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8.나.(1)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습니다.
 - 1)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 2)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 3)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 4) 그 밖에 법 시행령 제85조에서 정하는 거래
- (바) 집합투자업자는 위 (마)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을 제외합니다)을 취득하여서는 안됩니다.
- (아)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약증권,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합니다)을 취득하여서는 안됩니다.

(2) 모투자신탁

- (가)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집합투자증권,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 단락(8.나.(2)(가))에서 같습니다) 또는 파생상품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약증

권을 포함함. 이하 8.나.에서 같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을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모두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함)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함)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함],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함)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계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함),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모두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 2)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3) 모두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4)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5)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모두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모두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모두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나) 집합투자업자는 모두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함. 이하 동 단락(8.나.(2)(나))에서 같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모두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2) 모두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에 모두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 3)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4)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5) 모두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6)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다) 집합투자업자는 모두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모두자신탁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범위에서 **50%**를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 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를 하는 행위
 - 2) 모두자신탁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범위에서 **50%**를 초과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행위
 - 3) 모두자신탁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범위에서 **20%**를 초과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행위
- (라) 집합투자업자는 모두자신탁의 계산으로 모두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모두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합니다.
 - 2) 법 제191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마) 집합투자업자는 모두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또는 법 제191조에 따른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 (바) 집합투자업자는 모두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제외함)하여서는 안됩니다.

- (사)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으로 모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아)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8.나.(2)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습니다.
 - 1)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 2)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 3)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 4) 그 밖에 법 시행령 제85조에서 정하는 거래
- (자) 집합투자업자는 위 (아)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차)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을 제외함)을 취득하여서는 안됩니다.
- (카)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을 포함함)을 취득하여서는 안됩니다.
- (타)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그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취득 없이 위 (가), (나), (다)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파) 위 (가)의 1), 5) 내지 7), (나)의1), 2)는 모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1) 당해 투자신탁

당해 투자신탁은 자산의 90% 이상을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익을 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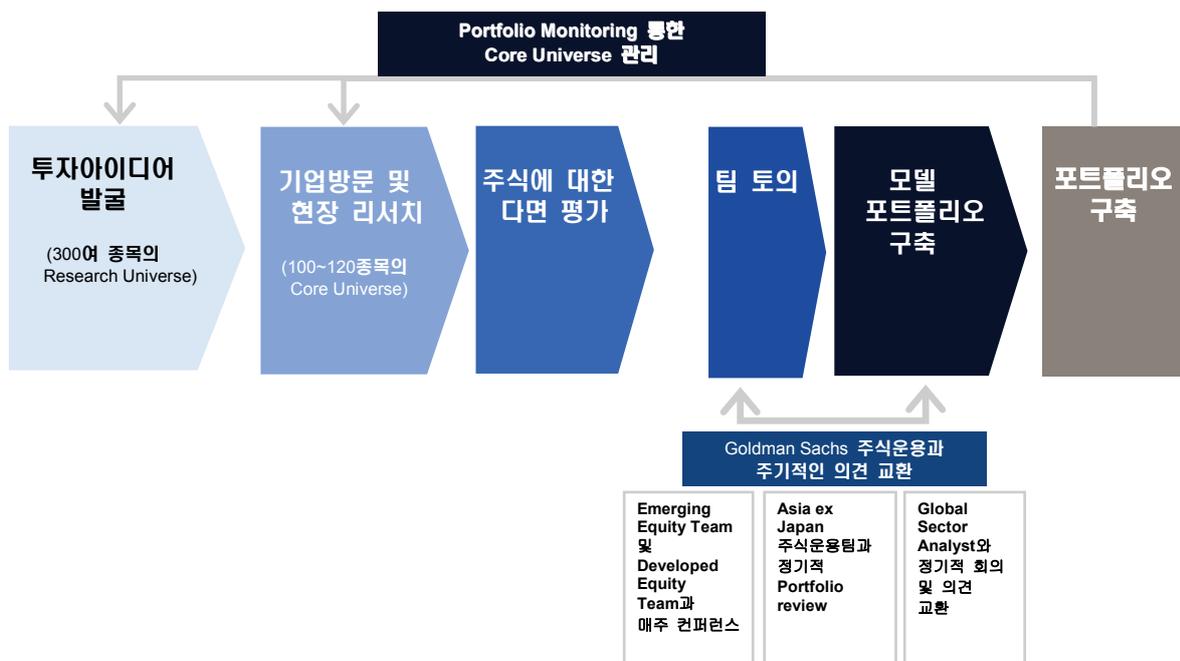
(2) 모투자신탁

모투자신탁은 투자자산의 7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기 자본 상승 달성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이란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을 말합니다.

모투자신탁은 한국의 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 모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또는 새로운 비교 지수가 등장하는 경우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이는 관련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됩니다.

*비교 지수: KOSPI Index(총수익 기준)입니다.

< 운용 프로세스 >



나. 위험관리

다양한 개별종목이 편입됨에 따라 개별종목 리스크뿐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체의 사전목표 대비 실제 운용시 나타나는 초과수익, tracking error등이 목표대비 일정수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 일반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자의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개별 회사들의 활동 및 일반시장 및 경제조건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징이 있는 주식투자 관련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수익자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수익자들은 주식 및 주식관련 증권에 기초하여 발행회사로부터 투자자금을 회수함에 있어서는, 그 순위가 동 발행회사가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채무(발행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포함)의 변제보다 후순위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당해 투자신탁에 투자한다고 하여, 이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완전한 투자 포트폴리오가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가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 모델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투자자는 본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 외에 다른 종류의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나. 특수위험

• 신흥시장에의 투자

신흥 경제 또는 신흥 주식시장을 보유한 국가들은 정치적, 경제적인 면에서 눈부시게 발전, 성장하고 있으나, 해당 국가들은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안정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안정성 부족은 비합법적 수단을 통한 정부의 변화 또는 변화 시도,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 불안, 내부 반란, 이웃 국가들과의 적대적 관계 및 민족적, 종교적 및 인종적 갈등 또는 충돌 등에 기인하고, 권위주의적 정부 또는 군부의 정치적 및 경제적 의사결정에의 관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들 중 일부는 과거에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때로는 사기업의 자산을 국유화 또는 몰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러한 국가들은 자산의 국유화 또는 몰수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 밖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발전으로 인해 상기 국가들에서의 본건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의 가치와 상기 국가들에 이루어 질 수 있는 본건 모투자신탁의 추가적인 투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들에 있는 증권시장은 소규모이고 성숙하지 못하였고, 유가증권 거래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해 본건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이 비유동적으로 될 수 있고, 선진국 주식시장에서의 투자자산보다 더 변동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본건 모투자신탁은 특정 투자를 행하기 전에 특수한 보관 등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회사들에 대한 유용한 재정적 또는 회계적인 정보가 거의 없을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 가치를 평가하거나 투자 전망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결제시스템이 선진국 주식시장보다 덜 발달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본건 모투자신탁이 포트폴리오 거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본건 모투자신탁 투자자산이 더 제한된 범위의 거래 상대방을 통하여 거래되게 되고 그로 인해 신용 위험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신흥 시장에 투자하는 본건 모투자신탁의 대금 상환 지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들은 결제일 이전에

매매 차익금 또는 거래를 위한 결제 대금 전액을 고시하여야 하는 매매차입금 또는 선지급 시스템을 운영하여 본건 모투자신탁의 잠재적 차입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신용상, 운영상의 위험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 집중 위험

본건 모투자신탁의 특정 국가에의 투자 집중은 본건 모투자신탁이 해당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사회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 사건으로부터 보다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규모 자본회사

소규모의 인지도 낮은 회사들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대규모 기업이나, 발전도 및 인지도가 높은 회사들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 및 높은 포트폴리오 가격 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회사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주식들은 가격 변동성이 높습니다. 이는 소규모 회사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전망, 이러한 주식의 시장에서의 유동성 부족, 경제상황 변동에 대한 높은 민감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회사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품종류 및 시장, 유통경로, 재정 및 운용상 지원을 제한적으로 가지고 이로 인하여 일반적인 대규모회사들보다 높은 투자위험을 갖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구조조정된 회사들 또는 금융적인 어려움을 겪은 회사들의 주식들 역시 대규모 회사의 주식보다 높은 가격 변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투자회사

투자설명서의 조건에 따라 본건 모투자신탁은 주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한 양도가능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들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수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부동산 가치가 경기의 영향을 받는 특성(cyclical nature), 일반적인 경제상황 또는 지역적인 경제상황과 관련된 위험, 과밀건축 및 경쟁 증가, 재산세 및 운영비용 증가, 인구통계학적 임대수입이 인구통계에 따르거나 변동하는 점, 건축규제 법령의 변동, 사고 또는 수용 손실, 환경적 위험, 임대 제한 규정, 인접지역 가치 변동, 관련 당사자 위험, 점유권에 대한 소송에서의 변동, 이자율 상승 및 기타 부동산 자본시장의 영향 등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의 상승은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부동산투자회사 주식들에 투자한 경우, 본건 모투자신탁의 가치가 직간접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전환주식

본건 모투자신탁은 전환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행사가격으로 발행회사의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통상적인 장기 채무증서인 회사채 또는 우선주가 이에 포함됩니다. 모든 채무증권과 마찬가지로 전환주식의 시가는 이자율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반대로 이자율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환주식은 일반적으로 건전성이 유사한 비전환주식보다 낮은 이자 또는 배당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전환주식의 기준이 되는 보통주식 시가가 전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환주식의 가격이 기초 보통주식의 가격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초가 되는 보통주식의 시가가 감소하면 전환주식은 수익률에 기하여 더 많이 거래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기초가 되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환주식은 일반적으로 발행회사의 자본구조에서 보통주식보다 우선순위를 가지며, 결과적으로 발행회사의 보통주식보다 건전성이 더 높고 그보다 더 낮은 위험을 갖습니다. 단, 그렇게 위험이 감소하는 정도는 대부분 전환주식이 고정 수입 증권으로서 판매되는 정도에 따릅니다. 전환주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집합투자업자는 기초가 되는 보통주식의 수익성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둘 것입니다.

• 파생상품 투자 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는 수익자들에게 추가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위험은 (i) 해당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및/또는 (ii)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의 잠재적인 비유동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이 헷지 목적으로 활용되는 범위 내에서, 헷지 파생상품의 가치와 그것이 헷지하는 유가증권 또는 포지션의 가치가 충분히 서로 연관되지 않는 경우 본건 모투자신탁에 대한 손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ISDA 마스터계약

본건 모투자신탁은 ISDA 마스터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형태의 파생상품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ISDA 마스터계약은 해당 계약 당사자들 간의 계약관계(각 권리, 채무 및 의무를 포함함)를 규율하는 주요 규정을 정하고 있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계약입니다.

본건 모투자신탁을 대신하여 파생상품거래를 체결할 때, 본건 모투자신탁을 대신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본건 모투자신탁을 대신하여 ISDA 마스터계약을 체결하는 각 거래상대방에게 특정 진술 및 확약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진술 및 확약은, 본건 모투자신탁의 설립 기한, 모투자신탁의 완전한 자격 및 권한, 본건 모투자신탁의 충분한 동의 획득 및 관련 법률 준수, 관련 ISDA 마스터계약, 관련 계약 및 거래에 본건 모투자신탁이 구속된다는 속성 등에 대한 본건 모투자신탁의 그에 대한 진술 및 확약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진술의 위반이 있는 경우, 기타 잠재적인 결과를 추가하여, 각 관련 거래상대방은 본건 모투자신탁과 체결한 ISDA 마스터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기타 협의 중인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일반위험

발행회사들은 일반적으로 국가별로 상이한 회계, 감사 및 재무보고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거래량, 가격변동을 및 발행회사의 유동성은 정부 감독 및 증권거래, 증권 딜러 및 증권회사들에 대한 규제가 다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법은 본건 모투자신탁이 동 국가에 소재하는 특정 발행회사의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장은 청산 및 결제 절차도 서로 다릅니다. 결제 지연으로 일정 기간 본건 모투자신탁 자산의 일부가 투자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성과가 없게 되거나 또는 본건 모투자신탁이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제 문제로 인해 본건 모투자신탁증권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 본건 모투자신탁증권의 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본건 모투자신탁에 손실을 가져오거나, 또는 본건 모투자신탁이 증권 매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한 상대방에 대해 채무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비유동성 자산

본건 모투자신탁은 유동성이 적은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건 모투자신탁은 유가증권을 즉시 매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이 없는 유가증권의 매입가격이나 그 후의 평가가격은 할인될 수 있으며,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 존재하는 이에 상응하는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으로부터 크게 할인될 수 있습니다.

• Corporate Action

본건 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의 발행회사는 수시로 그 증권과 관련하여 Corporate Action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형 유가증권과 관련한 Corporate Action은 특정 가격에 신규 주식의 매입을 제안하는 것이나 기존 주식을 매수하는 것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정 Corporate Action은 자발적인 것이며, 이는 본건 모투자신탁이 적시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Corporate Action에 참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정 Corporate Action에 참가하는 것은 본건 모투자신탁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본건 모투자신탁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보관회사로부터 자발적 Corporate Action에 대한 충분한

사전 통지를 수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건 모투자신탁이 그러한 Corporate Action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합리적인 접근 방식으로 취득한 정보들 중에는 유용하지 않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재량권을 선의로 행사할 것입니다. 본건 모투자신탁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자발적 Corporate Action의 충분한 사전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본건 모투자신탁은 적시에 그러한 Corporate Action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 Corporate Action에의 참가 또는 불참가는 본건 모투자신탁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투자 제한

정부의 규정 및 제한은 본건 모투자신탁이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금액 및 유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또한 시장가격, 유동성, 증권에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본건 모투자신탁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대량 환매 위험

제한된 기간 내의 많은 양의 수익증권 상환이 있으면 본건 모투자신탁이 그러한 상환이 없는 바람직한 경우에 비교하여 기존 거래를 보다 빨리 청산해야 될 수 있으며, 이는 본건 모투자신탁의 환매된 수익증권 및 환매되지 않은 수익증권 모두의 가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수익증권 환매로 인한 위험은 본건 모투자신탁이 만기가 일정한 구조화 상품의 일부에 투자한 경우 및 그러한 구조화 상품이 헤징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에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본건 모투자신탁과 관련되거나 본건 모투자신탁이 투자하거나 아니면 본건 모투자신탁 성과의 기초가 되는 기초주식, 통화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금융파생상품 및 그러한 구조를 포함한 거래를 수립, 작성, 판매, 발행하거나 그의 대리인 또는 판매회사로서 행위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거래의 거래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파생상품의 구조 또는 기타 속성은 본건 모투자신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가 발생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이로 인해 초래된 본건 모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의 감소는 본건 모투자신탁이 수익을 창출하고 손실을 복구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 의결권 및 주식매매금지

집합투자업자는 그 재량으로 본건 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적격 투자자산과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의결권이나 기타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본건 모투자신탁은 의결권 또는 기타 권리의 행사에 대한 지침을 설정할 수 있으며, 본건 모투자신탁은 그 재량으로 이러한 의결권 또는 기타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적격 투자자산은 “주식매매금지(share blocking)”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의결권 기타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보관기관들이 자신이 보관중인 투자자산의 거래를 “동결”시킬 때 발생합니다. 주식매매금지는 일반적으로 관련 투자자산에 대해 개최가 예정되는 주주총회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에 이루어집니다. 투자자산은 “동결”되는 동안에는 거래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비유동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건 모투자신탁(또는 그 대리인)은 “주식매매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적격 투자자산에 대하여 의결권의 행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 평가오류 조정에 대한 중요성 방침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당해 투자신탁 또는 모투자신탁은 당해 투자신탁 또는 모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 산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하여 중요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방침상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오류들이 있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 또는 모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중요성 방침이 적용되는 날에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들의 경우에 수익자들은 순자산가치의 산정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수령하였을 경우와 다른 경제적 결과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공정가치” 가격의 검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증권 또는 증서에 대한 가격을 결정할 수 없거나 외부공정가치산정 업무제공자들로부터 가격을 얻을 수 없는 경우 특정 증권 및 증서에 대한 “공정가치”가격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익자는 본건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모두자산탁에 대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이런 공정가격을 이용하기 전에 이러한 가격에 대하여 “합리성(reasonableness)” 시험이나 기타 다른 시험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부채의 인식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알지 못하는 부채(세금 관련 부채 포함)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확정적인 부채일 수도 있고, 잠재적인 부채일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파악하는 한 집합투자업자는 회계 처리 기준에 의거, 또는 관련 회계 처리 기준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의거하여 그러한 부채를 인식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 투자신탁은 (i) 그러한 부채의 인식이 회계 처리 기준상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또는 (ii) 집합투자업자가 그러한 부채를 유발하는 요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는 (iii) 그러한 부채를 유발할 수도 있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세금 관련 규정 포함)의 해석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또는 (iv) 집합투자업자가 그러한 부채와 관련하여 지불이 필요할 것을 예측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는 (v)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가 그와 같이 판단하였기 때문에 해당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부채가 인식되기 이전에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그러한 부채가 인식되었을 경우에 비하여 높은 기준가격으로 투자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집합투자업자가 그러한 부채에 따른 지급을 하여야 하거나,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부채의 인식 또는 지급은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그와 같은 부채를 인식하거나 지불하는 시기에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그러한 부채가 발생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투자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인식 부채 총액을 일반적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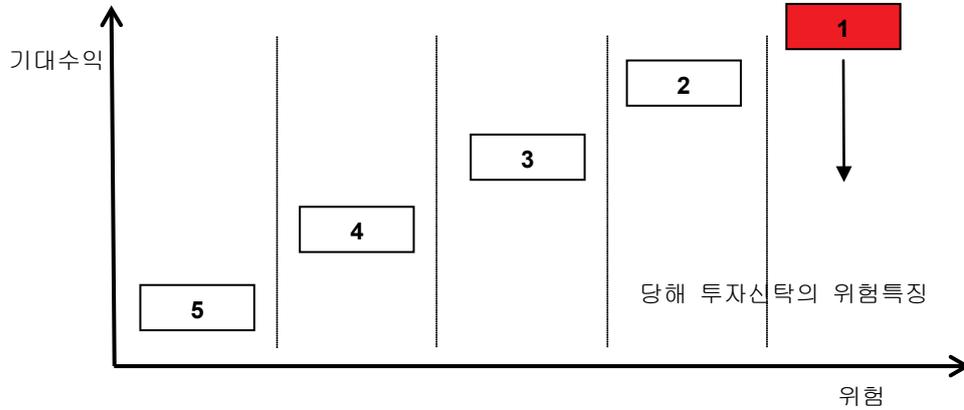
잠재적 이해상충에 대하여는 “별첨I”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1) 환매금지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에도, 투자대상 자산이 장외파생상품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충도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충도매각에 따라 수익자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주2)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 가능성에 따라 수익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환매대금은 환매청구 당시 예상되는 환매대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3)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

라.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여러 다른 자산보다 높은 가격변동성을 나타내는 한국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두자산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며, 5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가장 위험이 높은 상품을 나타내는 1등급으로 분류되는 고위험 투자상품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개별 회사들의 활동 및 일반시장 및 경제조건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지닌 주식 투자와 관련한 높은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수익자들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수익자들은 주식 및 주식관련 증권에 기초하여 발행회사로부터 투자자금을 회수함에 있어서는, 그 순위가 동 발행회사가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채무(발행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포함)의 변제보다 후 순위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및 상세설명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이상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상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 15%이상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파생상품투자신탁 - 부동산실물 또는 부동산관련증권에 50%이상 투자하는 부동산투자신탁
2등급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이하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하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미만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파생상품투자신탁 - 부동산실물 또는 부동산관련증권에 50%이하 투자하는 혼합형투자신탁
3등급	중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30%이하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30%이하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후순위채권, 투기등급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0%미만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파생상품투자신탁
4등급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채 및 회사채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5%미만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파생상품투자신탁 - 채권형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투자신탁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MF -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상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파생상품투자신탁

* 상기 도표는 당사의 위험등급별 분류기준을 나타내기 위한 예시목적일 뿐이며 모든 투자상품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 방법

수익자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영업일 영업시간 중에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업일의 15시까지 수령된 주문 및 자금은 해당 영업일에 처리되며, 영업일의 15시 경과 이후에 수령된 주문 및 자금은 다음 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 영업일에 처리됩니다.

판매회사에 따라서는, 수익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회사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수익증권매수청구서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의 매입에 필요한 요건, 매입 방법, 기타 매입 절차 등 수익증권의 매입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가 개별 판매회사와 확인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판매회사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직·간접적 손실 또는 결과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수익증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합니다. 다만, 종류 C2, C3, C4, C5 수익증권은 각 종류의 가입 자격에 따라, 수익자의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 종류 A 수익증권 : 제한 없음
- 종류 C1 수익증권 : 제한 없음
- 종류 C2 수익증권의 수익자 : 종류 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 종류 C3 수익증권의 수익자 : 종류 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 종류 C4 수익증권의 수익자 : 종류 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 종류 C5 수익증권의 수익자 : 종류 C4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 종류 CI 수익증권 : 납입금액 50억 이상 투자자
- 종류 CE 수익증권 :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투자자
- 종류 N 수익증권 : 모투자신탁의 초기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예를 들어, 초기운용자금을 대기 위한 목적(seeding purpose)) 집합투자업자의 모회사 또는 그 모회사의 외국 소재 계열회사가 투자일 현재 현지 외환시장의 환율을 기준으로 미화 1백만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원화를 투자하는 경우

매입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판매회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금전등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한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함)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부록 I. 용어에 기재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로 합니다. 다만, 당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이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1,000원)으로 합니다. 수익자가 영업일 1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당일 포함)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

권의 종류를 발행한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1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함)으로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그 투자금을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3) 매입관련 유의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시장교란, 자금세탁 우려, 시차활용거래, 과도한 거래 및 이 투자신탁의 청산 등과 같은 합리적인 사유 발생시, 그 재량으로 투자자의 수익증권 매입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기간 (이하 명시됨)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수익증권 환매연기가 된 사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사실 등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동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판매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달리, 법령에 따라 수익증권의 판매가 제한되는 경우, 투자자는 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판단에 따라 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신규 판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그 판단에 따라 신규 판매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판매 중단 또는 재개에 관하여 통지 또는 공고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통지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당해 투자신탁 집합투자계약, 투자설명서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거나 중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각 영업일에 15시까지 수익증권 환매 주문을 수령합니다. 판매회사가 15시 경과 이후에 수익증권 환매요청을 수령한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수익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수익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 단락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물보유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장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합니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당일을 포함합니다)부터 제4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국내외의 공휴일 등 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환매대금 지급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그 지급이 가능하게 되는 즉시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판매회사(위 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합니다)는 위 단락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합니다)가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의 범위에서 집합투자재산으로 소유 중인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만 지급합니다. 다만, 당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 및 모두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두자신탁이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수익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수익증권의 원활한 환매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54조 제2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합니다)는 본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소정의 양식에 따른 수익증권환매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수익증권환매청구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상기 (1)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합니다. 이하 아래에서 같습니다)(당일을 포함함)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합니다)에는 부록 I. 용어에 기재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3)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가)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계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라) 모두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 2)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나) 그밖에 법 시행령 제257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
-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라) 그밖에 법 시행령 제257조 제3항에서 정한 사항

(라)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4) 환매 연기기간 동안 매수 및 환매신청의 처리 등

(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매회사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 2)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나) 집합투자업자는 위 (가)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판매회사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다) 환매연기 이후, 환매 연기 기간 동안 수령한 수익증권의 매수 및 환매신청은 환매 연기사유가 해소된 이후의 익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환매 연기 기간 동안에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의 산정 중단에 관하여 공시하고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대한 매수 및 환매를 신청한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기준가격의 산정 중단이 해소되는 때에 매수 및 환매의 재개를 할 수 있습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위 (4) (가)항에 따른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함)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일부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237조 제7항에 따라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 (다) 집합투자업자는 위 (4) (가)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라) 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마)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6항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 (바) 집합투자업자는 위 제(가)항에 따라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판매회사, 신탁업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가) 수익자 또는 그 수익자의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2영업일전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3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나)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환매수수료

(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다만, 판매회사가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합니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별로 환매를 청구하는 해당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집합투자재산에 편입합니다.

(나)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합니다. 여기서 “이익금”이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과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시 적용된 기준가격의 차에 환매하는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환매하는 수익증권 좌수에 대하여 현금 등으로 지급된 이익분배금은 합산하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합니다.

1. 종류 A 수익증권
 -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2. 종류 C1, C2, C3, C4, C5, CI, CE, N 수익증권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주)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위 원칙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 전환

(1) 수익증권의 전환

집합투자업자는 종류 C1, C2, C3, C4의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종류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종류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종류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
4. 종류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C5 수익증권으로 전환

이와 같이 전환하는 경우, 각 종류별 보유기간 1년이 만료되는 시점(“전환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투자신탁의 결산, 전환 대상 수익자의 추가매수, 환매신청, 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대상 좌수가 전환일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투자분의 확정, 추가매수 또는 환매신청 절차 등이 종료되어 전환대상 좌수가 확정되는 일자의 익 영업일에 전환합니다.

이와 같이 전환되는 수익증권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2) 수익증권의 전환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집합투자업자는 아래 나. 항목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합니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법 제238조 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합니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 종류 간 보수 및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영업소 및 집합투자업자 (www.goldman-sachs.co.kr)·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주 1)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는 당해 투자신탁과 모투자신탁 양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준가격 오류 수정

집합투자업자는 적용 법령 및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종류의 좌당 기준가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260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지체없이 변경한 후에 다시 공고·게시(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의 1천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함)하여야 합니다.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합니다.

- (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 임원
- (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 임원
- (다) 준법감시인
- (라)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자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의 적용 여부 등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주 1) 위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은 당해 투자신탁과 모투자신탁 양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수익증권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 1)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당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판매회사가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함)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별로 환매를 청구하는 해당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1) 당해 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종류 A	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0% 이하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종류 C1	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종류 C3	종류 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종류 C4	종류 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종류 C5	종류 C4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종류 CE	온라인 이용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종류 CI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종류 N	집합투자업자의 모회사 또는 그 모회사의 외국 소재 계열회사로 제한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주 1) “이익금”이란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과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된 기준가격의 차에 환매하는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환매하는 수익증권 좌수에 대하여 현금 등으로 지급된 이익분배금은 합산하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합니다.

(2) 모투자신탁

(신한아이타스 제공)

구분	수수료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기타
모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선취, 후취 판매수수료	0%	해당없음	당해 투자신탁이 모투자 신탁에 지급하는 수수료
	환매수수료	0%	해당없음	

주 1) “이익금”이란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과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된 기준가격의 차에 환매하는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환매하는 수익증권 좌수에 대하여 현금 등으로 지급된 이익분배금은 합산하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합니다.

나. 당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합니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나누어 집니다.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합니다)은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보수계산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의 전부해지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합니다.

(1) 당해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신한아이타스 제공)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A	제한 없음	집합투자업자보수	0.75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0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0	
		기타비용	0.0025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7925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7954	-
		증권 거래비용	0.3891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C1	제한 없음	집합투자업자보수	0.75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5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0	
		기타비용	0.0025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2.2925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2953	-
		증권 거래비용	0.3942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75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4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0	
		기타비용	0.0022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2.1922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1947	-
		증권 거래비용	0.4084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C3	종류 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75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3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0	
		기타비용	0.0000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2.0900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0950	-
		증권 거래비용	0.7640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C4	종류 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75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2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0	
		기타비용	0.0008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9908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9940	-
		증권 거래비용	0.3750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C5	종류 C4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75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0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0	
		기타비용	0.0000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1.7900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7952	-
		증권 거래비용	0.4494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CI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투자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75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2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0	
		기타비용	0.0025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0.9925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 보수·비용 포함)	0.9955	-
		증권 거래비용	0.3915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CE	온라인 이용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75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 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2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0	사유 발생시
		기타비용	0.0025	
		총보수·비용	1.9925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 보수·비용 포함)	1.9955	-
		증권 거래비용	0.3876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N	집합투자업자의 모회사 또는 그 모회사의 외국 소재 계열회사로 제한	집합투자업자보수	0.75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1000	
		신탁업자보수	0.02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0	사유 발생시
		기타비용	0.0020	
		총보수·비용	0.8920	-
		합성 총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0.8969	-
		증권 거래비용	0.7547	사유 발생시

주 1) 종류 CE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보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기간별로 달리 적용합니다.

가. 2011년 10월 18일부터 2012년 10월 17일 까지 : 연 1.2000%

나. 2012년 10월 18일부터 2013년 10월 17일 까지 : 연 1.1000%

다. 2013년 10월 18일 이후 : 연 1.0000%

주 2) 종류 CE 수익증권의 총 보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기간별로 달리 산정됩니다.

가. 2011년 10월 18일부터 2012년 10월 17일 까지 : 연 1.9925%

나. 2012년 10월 18일부터 2013년 10월 17일 까지 : 연 1.8925%

다. 2013년 10월 18일 이후 : 연 1.7925%

주 3) 종류 CE 수익증권의 합성 총보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기간별로 달리 산정됩니다.

가. 2011년 10월 18일부터 2012년 10월 17일 까지 : 연 1.9955%

나. 2012년 10월 18일부터 2013년 10월 17일 까지 : 연 1.8955%

다. 2013년 10월 18일 이후 : 연 1.7955%

주 4)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1.09.01 ~ 2012.08.31]

- 주 5)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1.09.01 ~ 2012.08.31]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 6)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 7)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또한 종류 CE 수익증권의 총보수·비용 비율은 주 1), 주 2)에서와 같이 기간별 해당 판매보수를 각각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주 8)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또한 종류 CE 수익증권의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주1), 주 3)에서와 같이 기간별 해당 판매보수를 각각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주 9) 종류 C4, C5, N은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거래 실적이 없으므로 유사한 유형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합성 총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모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신한아이타스 제공)

구 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0000	
신탁업자보수	0.00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000	
기타비용	0.0030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0.0030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0.0030	
증권 거래비용	0.3854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1.09.01 ~ 2012.08.31]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1.09.01 ~ 2012.08.31]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 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신한아이타스 제공)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1,000원)

구분		투자기간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종류 A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282	659	1,061	2,182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82	660	1,063	2,185
종류 C1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235	724	1,239	2,651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35	725	1,240	2,654
종류 C2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225	693	1,187	2,547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25	694	1,188	2,549
종류 C3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214	661	1,134	2,440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15	663	1,137	2,445
종류 C4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204	630	1,082	2,335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04	631	1,084	2,338
종류 C5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83	568	977	2,119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84	570	980	2,125
종류 CI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02	318	551	1,220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02	318	552	1,224
종류 CE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94	632	1,050	2,185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94	632	1,051	2,189
종류 N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282	659	1,061	2,182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82	660	1,063	2,185

주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료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

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2) 종류 C1와 종류 A의 총 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2년이 되는 시점이나, 종류 유형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 3) 종류 C3, C5, N은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거래 실적이 없으므로 유사한 유형의 총보수·비용, 합성 총보수·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주 4) 종류 CE 수익증권 관련 총보수·비용은 2010년 10월 18일부터 2013년 10월 18일까지 매1년 단위로 인하는 판매회사 보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위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2)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제반 조세, 비용 및 경비를 공제한 후에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 및 관련 자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집합투자업자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에 관한 사항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i)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ii)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당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으로부터 당해 투자신탁이 받은 분배금은 당해 투자신탁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날에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당해 투자신탁의 환매 또는 분배와 관련하여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원천징수세 외에 모투자신탁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모두

자산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모투자신탁이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으로부터 이익을 지급받는 날, 또는 이익금이 재투자되는 날에 원천징수세를 부담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투자신탁으로부터 수익자에게로의 환매대금 지급시 또는 이익분배시(해당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 원천징수세 부과대상인 해당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및 벤처기업의 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의 경우 원천징수과세대상인 배당소득으로부터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는 하나,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채권 등 이자소득, 주식 배당소득, 비상장주식 및 채권 등 매매·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원천징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4%

수익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해당 수익자의 다른 종합소득(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율(최고 35% 세율에 지방소득세 3.5% 추가)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법인의 다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22% 세율에 지방소득세 2.2% 추가)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 또는 환급받게 됩니다.

※ 상기에 기재한 요약은 한국거주자인 투자자에게 한국에서 현재 적용되는 법률 및 관행에 기초한 것이며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수익자의 과세는 각자의 조세지위에 따라 상이합니다. 수익자들은 수익증권의 매입, 매수, 보유, 양도, 환매 및 기타 처분의 결과 조세부과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자신의 조세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특히 한국 이외의 국가의 납세의무자인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매입, 매수, 보유, 양도, 환매 및 기타 처분으로 인한 당해 국가에서의 조세 부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조세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이나 집합투자업자 모두 그 수익자들에게 특정 국가의 조세 행정이나 조세부담 요건에 맞게 짜여진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4기(2011.09.01 - 2012.08.31)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3기(2010.09.01 - 2011.08.31)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2기(2009.09.01 - 2010.08.31)	삼일회계법인	적정

(주) 본 제3부의 정보는 당해 투자신탁의 일반사무관리회사인 신한아이타스에서 제공한 자료로서, 일부 항목이 당해 투자신탁의 감사보고서상의 항목 및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항 목	제 4 기	제 3 기	제 2 기
	(2012.08.31)	(2011.08.31)	(2010.08.31)
운용자산	69,438,500,801	63,085,853,871	20,634,355,918
증권	69,438,500,801	63,085,853,871	20,634,355,918
파생상품	0	0	0
현금 및 예치금	0	0	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48,787,260	30,107,804	601,346
자산총계	69,487,288,061	63,115,961,675	20,634,957,264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96,173,362	10,769,787,956	3,580,294,183
부채총계	296,173,362	10,769,787,956	3,580,294,183
원본	70,710,194,571	52,346,173,719	17,054,663,081
이익잉여금	-1,519,079,872	0	0
자본총계	69,191,114,699	52,346,173,719	17,054,663,081

(단위 : 원)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항 목	제 4 기	제 3 기	제 2 기
	(2011.09.01 - 2012.08.31)	(2010.09.01 - 2011.08.31)	(2009.09.01 - 2010.08.31)
운용수익	-1,634,709,224	6,712,900,203	3,599,750,800
이자수익	0	0	0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634,709,224	6,712,900,203	3,599,750,800
기타수익	23,748,346	19,404,210	2,859,150
운용비용	956,454,273	508,188,667	184,382,449
관련회사 보수	956,454,273	508,188,667	184,382,449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2,234,980	2,689,660	446,760
당기순이익	-2,569,650,131	6,221,426,086	3,417,780,741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 원)

과 목	제 4 기(2012.08.31)		제 3 기(2011.08.31)		제 2 기(2010.08.31)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유가증권		69,438,500,801		63,085,853,871		20,634,355,918
1. 집합투자증권	69,438,500,801		63,085,853,871		20,634,355,918	
기 타 자 산		48,787,260		30,107,804		601,346
2. 기타미수금	48,787,260		30,107,804		601,346	
자 산 총 계		69,487,288,061		63,115,961,675		20,634,957,264
부 채						
기 타 부 채		296,173,362		10,769,787,956		3,580,294,183
1. 해지미지급금	48,787,260		30,107,804		601,346	
2. 보수미지급금	246,794,582		175,157,829		51,342,643	
3. 기타부채	443,090		1,805,660		39,610	
4. 수수료미지급금	148,430		105,870		35,430	
5. 미지급이익분배금			10,562,610,793		3,528,275,154	
부 채 총 계		296,173,362		10,769,787,956		3,580,294,183
자 본						
1. 원 본	70,710,194,571		52,346,173,719		17,054,663,081	
2. 이익잉여금(결손금)	-1,519,079,872					
당기: 70,710,194,571 좌 전기: 52,346,173,719 좌) (1,000 좌당 기준가격: 당기: Class A 975.71 원 당기: Class C1 970.43 원 당기: Class C2 971.08 원 당기: Class C4 973.36 원 당기: Class C1 982.64 원 당기: Class CE 973.77 원 전기: Class A 1,000.00 원 전기: Class C1 1,000.00 원 전기: Class C2 1,000.00 원 전기: Class C3 1,000.00 원 전기: Class C1 1,000.00 원 전기: Class CE 1,000.00 원 전기: Class N 1,000.00 원)						
자 본 총 계		69,191,114,699		52,346,173,719		17,054,663,08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69,487,288,061		63,115,961,675		20,634,957,264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 목	제 4 기 (2011.09.01-2012.08.31)		제 3 기 (2010.09.01-2011.08.31)		제 2 기 (2009.09.01-2010.08.31)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23,748,346		19,404,210		2,859,150
1. 이자수익						
2. 수수료수익	23,384,614		19,398,662		2,859,150	
3. 기타수익	363,732		5,548			
2. 매매이익과 평가이익		1,094,012,785		6,713,554,945		3,602,409,935
1. 집합투자증권매매이익	1,094,012,785		1,734,160,036		100,650,711	
2. 집합투자증권평가이익	0		4,979,394,909		3,501,759,224	
3. 매매손실과 평가손실		2,728,722,009		654,742		2,659,135
1. 집합투자증권매매손실	1,074,618,338		654,742		2,659,135	
2. 집합투자증권평가손실	1,654,103,671		0		0	
운 용 비 용		958,689,253		510,878,327		184,829,209
1. 운용보수	543,745,972		328,098,164		136,097,716	
2. 판매보수	383,710,783		162,594,161		41,027,565	
3. 수탁보수	14,498,759		8,748,171		3,628,584	
4. 사무수탁보수	14,498,759		8,748,171		3,628,584	
5. 기타비용	2,234,980		2,689,660		446,76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2,569,650,131		6,221,426,086		3,417,780,741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35.68		173.55		207.00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신한아이타스 제공)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09.01 - 2012.08.31	489	489	788	807	577	585	700	694
2010.09.01 - 2011.08.31	169	169	455	559	136	164	489	631
2009.09.01 - 2010.08.31	143	143	58	60	32	33	169	206

(주 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채투자분은 주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종류별 설정 및 환매현황

(신한아이타스 제공)

[단위:억좌, 억원]

종류 A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09.01 - 2012.08.31	119	119	221	220	103	104	238	232
2010.09.01 - 2011.08.31	12	12	161	202	53	67	119	152
2009.09.01 - 2010.08.31	4	4	9	11	2	2	12	14

(주 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채투자분은 주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종류 C1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09.01 - 2012.08.31	15	15	57	57	29	29	43	42
2010.09.01 - 2011.08.31	1	1	19	24	5	6	15	19
2009.09.01 - 2010.08.31	1	1	0	0	0	0	1	1

(주 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채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종류 C2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09.01 - 2012.08.31	0	0	22	22	1	1	21	20
2010.09.01 - 2011.08.31	0	0	0	1	0	0	0	0

(주 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채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종류 C3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09.01 - 2012.08.31	1	1	0	0	2	2	0	0
2010.09.01 - 2011.08.31	0	0	1	1	0	0	1	2

(주 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채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종류 C4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09.01 - 2012.08.31	0	0	2	2	1	1	1	1

(주 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채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종류 C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09.01 - 2012.08.31	31	31	52	52	27	28	56	55
2010.09.01 - 2011.08.31	10	10	34	43	13	17	31	40
2009.09.01 - 2010.08.31	10	10	8	9	8	9	10	12

(주 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채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종류 C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09.01 - 2012.08.31	205	205	252	269	109	108	349	343
2010.09.01 - 2011.08.31	0	0	205	220	0	0	205	224

(주 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종류 N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1.09.01 - 2012.08.31	152	152	43	43	195	197	0	0
2010.09.01 - 2011.08.31	147	147	31	31	27	34	152	194
2009.09.01 - 2010.08.31	129	129	18	18	0	0	147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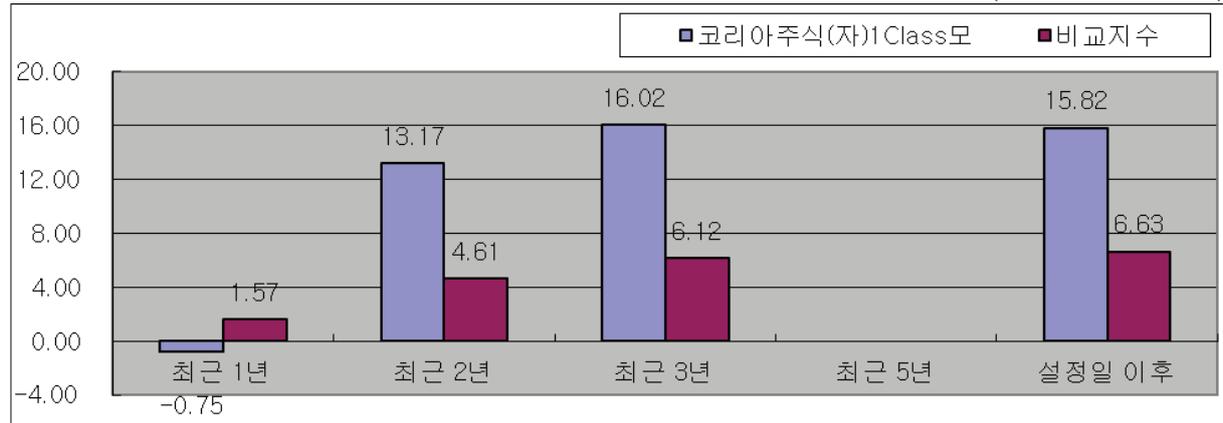
(주 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세전 기준)

(신한아이타스 제공)



(단위 :%)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1.09.01 ~12.08.31	10.09.01 ~12.08.31	09.09.01 ~12.08.31		08.09.01 ~12.08.31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 [주식](모)	-0.75	13.17	16.02		15.82
비교지수	1.57	4.61	6.12		6.63
종류 A	-2.43	11.34	14.10		13.95
비교지수	1.57	4.61	6.12		6.63
종류 C1	-2.96	10.64	13.40		13.15
비교지수	1.57	4.61	6.12		6.63
종류 C2	-2.89				2.69
비교지수	1.57				0.36
종류 C4	-2.66				-2.66
비교지수	1.54				1.54
종류 CI	-1.74				4.00
비교지수	1.57				0.38
종류 CE	-2.62	11.00	13.77		13.92
비교지수	1.57	4.61	6.12		7.83

주 1) 비교지수 : (0.95 * [KOSPI]) + (0.05 * [MMI(CD)지수])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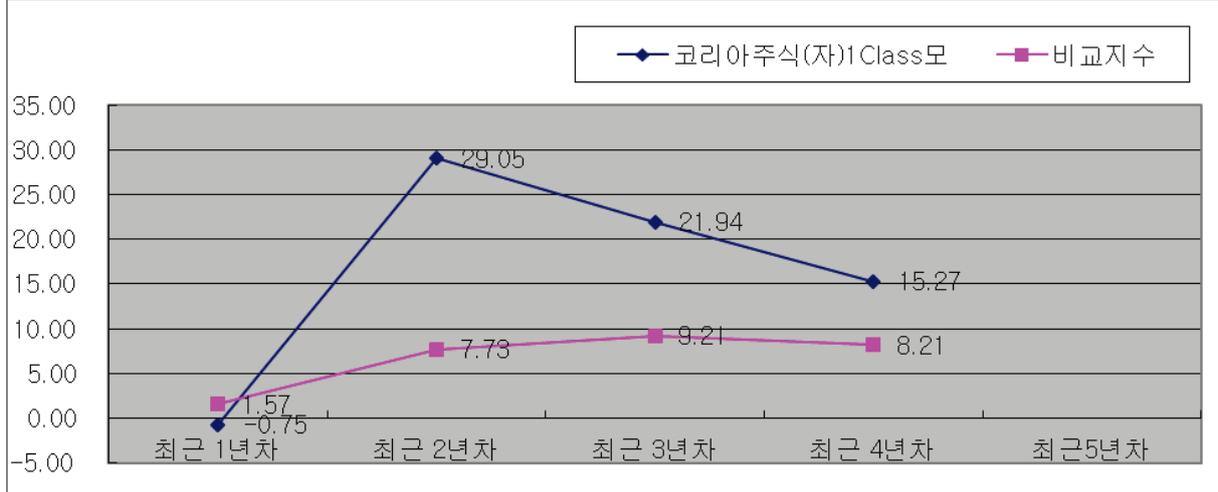
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5) 종류 C3, C5, N은 현재 설정이 되지 않아 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신한아이타스 제공)



(단위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1.09.01 ~12.08.31	10.09.01 ~11.08.31	09.09.01 ~10.08.31	08.09.01 ~09.08.31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 [주식](모)	-0.75	29.05	21.94	15.27	
비교지수	1.57	7.73	9.21	8.21	
종류A	-2.43	27.06	19.82	13.54	
비교지수	1.57	7.73	9.21	8.21	
종류C1	-2.96	26.15	19.12	12.42	
비교지수	1.57	7.73	9.21	8.21	
종류C2	-2.89	8.23			
비교지수	1.57	-0.89			
종류C4	-2.66				
비교지수	1.54				
종류CI	-1.74	9.03			
비교지수	1.57	-0.89			
종류CE	-2.62	26.53	19.52	14.35	
비교지수	1.57	7.73	9.21	13.10	

주 1) 비교지수 : (0.95 * [KOSPI]) + (0.05 * [MMI(CD)지수])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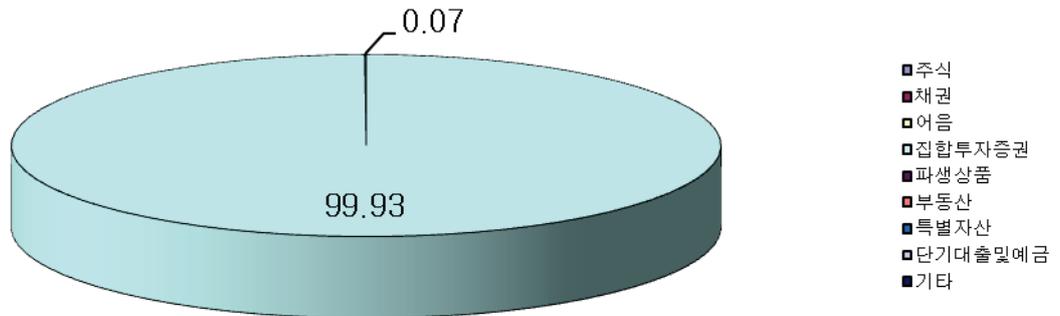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

- (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 8) 종류 C4, C5는 현재 설정이 되지 않아 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1) 당해 투자신탁

(신한아이타스 제공)



[2012.08.31 현재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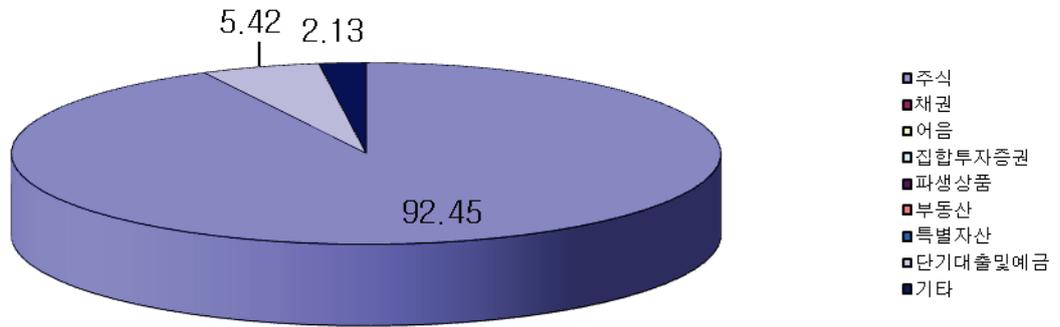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694	0	0	0	0	0	0	1	695
	(0.00)	(0.00)	(0.00)	(99.93)	(0.00)	(0.00)	(0.00)	(0.00)	(0.00)	(0.00)	(0.07)	(100.00)
합계	0	0	0	694	0	0	0	0	0	0	1	695
	(0.00)	(0.00)	(0.00)	(99.93)	(0.00)	(0.00)	(0.00)	(0.00)	(0.00)	(0.00)	(0.07)	(100.00)

(주 1) 괄호 안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 2) 어음 등 :CD 및 어음을 나타냄

(2) 모 투자신탁

(신한아이타스 제공)



[2012.08.31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659	0	0	0	0	0	0	0	0	39	15	713
	(92.4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42)	(2.13)	(100.00)
합계	659	0	0	0	0	0	0	0	0	39	15	713
	(92.4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42)	(2.13)	(100.00)

(주 1) 괄호 안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 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가) 국내 채권 구성 현황

해당 없음

(나) 해외 주식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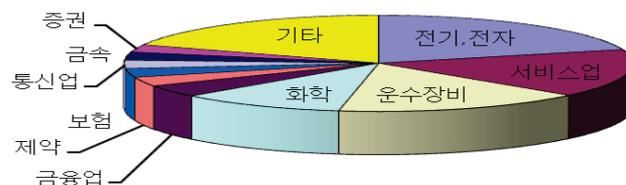
해당 없음

(다) 해외 채권 구성 현황

해당 없음

(라) 국내 주식 업종별 구성 현황

(신한아이타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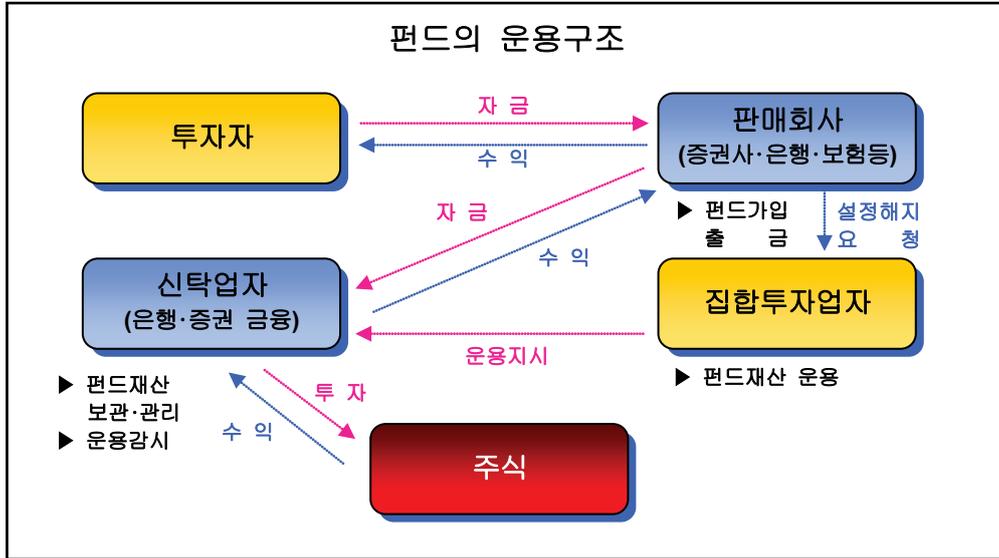
[2012.08.31 현재 / 단위 : 억원,%]

	업종명	평가액	보유비율
1	전기,전자	134	20.41
2	서비스업	107	16.23
3	운수장비	105	15.86
4	화학	70	10.57
5	금융업	27	4.11
6	제약	20	3.09
7	보험	20	2.96
8	통신업	18	2.76
9	금속	18	2.75
10	증권	17	2.52
11	기타	123	18.74
	합 계	659	100.00

주) 보유비율=평가액/총평가액*100

(마) 국내외 파생상품 구성현황
해당 없음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골드만삭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226번지 흥국생명빌딩 19층 우편번호 110-786 전화: 3788-1400 홈페이지: www.goldman-sachs.co.kr
회사 연혁	2007년 9월 : 골드만삭스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
자본금	222억
주요주주현황	GSAM. L.P.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집합투자업자는 이하의 주요업무를 수행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
- 관계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기타 업무

(2) 집합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 (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 (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
 - 2)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 3)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4) 법 제251조 제4항에 따른 대출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 가)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바) 증권금융회사
 - 사) 종합금융회사
 -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6)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 8)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
 - 9)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위 (나)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라) 집합투자업자는 위 (나)항 단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합니다.
- (마)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5조에서 정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로서 그 집합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들,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요약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12.3.31.	2011.3.31.	계정과목	'11.4.1 ~'12.3.31	'10.4.1 ~'11.3.31
유동자산	32,949	25,022	영업수익	12,908	12,627
고정자산	1,964	2,305	영업비용	20,131	20,041
자산총계	34,913	27,327	영업이익	(7,223)	(7,414)
유동부채	7,694	3,644	영업외수익	0	0
고정부채	1,150	2,341	영업외비용	0	0
부채총계	8,844	5,985	경상이익	(7,223)	(7,414)
자본금(*)	22,230	22,110	특별이익	-	-
자본잉여금	11,879	30,641	특별손실	-	-
이익잉여금	(8,040)	(31,409)	법인세비용	49	0
자기자본총계	26,069	21,342	세전당기이익	(7,272)	(7,414)

*상기 재무제표는 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라. 운용자산 규모

(신한아이타스 제공)

[2012.08.31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 파생	특별자산및 파생	혼합자산및 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2,443	5,729	0	0	1,395	195	0	2,548	0	0	0	12,310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1)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일반사무관리회사로 신한아이타스 주식회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및 결정, 이 투자신탁의 활동과 관련한 장부, 기록 및 명세서의 보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장부 등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열람을 위해 제공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보수는 이 투자신탁의 자산에서 지급됩니다.
- (2)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업무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8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 (3) 모투자신탁의 매매주문업무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증권 등의 단순한 매매주문업무를 계열회사인 Goldman Sachs (Singapore) Pte.에게 위탁합니다. 동 회사는 싱가포르 통화청(MAS)으로부터 자본시장업 인가를 획득하였으며, 동 회사에 대한 보수는 집합투자업자 보수에서 지급됩니다.
- (4)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 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민법 제 756 조가 준용됩니다. 즉 집합투자업자는 업무수탁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업무수탁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가 9-1(우편번호 100-091) ☎ 1599-9999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bstar.com

(2) 주요업무

(가) 주요업무

신탁업자는 다음과 같은 주요 활동을 수행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등
- 법령 및 신탁계약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

(나)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 가)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나)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함. 이하 같음)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다) 신탁업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위 제나)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라)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가 법령,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마)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안됩니다.
 - 해당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에 한함)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 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 사)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 아)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차)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이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신탁업자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와 이들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신탁업자의 변경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새로운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업자의 책임 및 의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만 신탁업자는 사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탁업자 변경은 수익자총회에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 아이타스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02) 2168-04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aitas.com

(2) 주요업무

(가) 주요업무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다음과 같은 주요 활동을 수행합니다:

- 기준가격 계산 업무
- 투자신탁의 활동과 관련한 장부, 기록, 명세서의 보관 및 동 장부, 기록 등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열람을 위해 제공하는 업무
- 법령 및 신탁계약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거나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그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채권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주소및 연락처	서울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 02-399-335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7번지 유화빌딩 9층 ☎ 02-398-3900	서울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대일빌딩 15층 ☎ 02-3215-14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bond.co.kr	www.npricing.co.kr

(2) 주요업무

(가) 주요업무

채권평가회사는 다음과 같은 주요 활동을 수행합니다: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평가정보 제공.

(나) 채권평가회사의 의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및 수익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소집, 운영 및 의결권행사방법

- (가)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나)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또한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 (다) 위 (가)항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만으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라)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마) 수익자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상의 수익자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동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바)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사)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아)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위 (라)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항에서 같음)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

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함)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자)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위 (바)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합니다.

(차)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카) 위 (라)항, (바)항, (아)항, (자)항은 위 (다)항에 의한 수익자총회에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봅니다.

(타)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파) 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수익자총회 의결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함)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기타 법령 및 동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3)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가) 법상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해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 (가)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 (가)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신탁계약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라)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 (다)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합니다.

(4)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 (가)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나)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위 (가)항에 따른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위 (1)의 (라)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합산합니다.
- (라)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마)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위 (라)항에 따른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수익자명부

- (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나)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다)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기준일이라 합니다")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습니다.

- (라)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마) 한국예탁결제원은 위 (라)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 (바) 위 (마)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 연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경우에만 기준일의 실질수익자에 관한 위 (마)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 위 (바)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예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예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 (아) 집합투자업자가 위 (다)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 제4항의 전단을 준용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2)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제반 조세, 비용 및 경비를 공제한 후,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판매회사는 해당 모든 조세 및 환매수수료를 공제한 이후 수탁회사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 및 관련 자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 서류의 열람; 등초본 교부 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들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 하지 못합니다.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나 판매회사들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은 소제기 당사자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들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들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신탁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들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들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입수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업자는 시차활용거래 및 관련 관행을 금지하기 위한 법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예외를 전제로, 수익자에게 당해 투자신탁의 자산보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동 정보를 요청한 모든 수익자들에게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제공합니다.
- (3)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합병가액은 투자신탁을 합병하는 날의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합병계획서에 관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 (4)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 법 제184조 제4항, 법 제246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 법 제420조 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합병·분할·분할합병
- 법 제420조 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설정한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 미수금, 미지급금의 처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규정 제7-11조 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규정 제7-11조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가)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나)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가)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들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나)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이하 (2)에서 “기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다)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가)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들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나) 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7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다)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장부 및 서류

(가)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

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를 1년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총리령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나)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다)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라)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 (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광고를 하는 때에는 헤럴드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서울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 (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가) 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8)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여하한 사항의 발생에 대한 통지의 수령
- 9) 설정 및 설립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10)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다) 위 (나)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2)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 3)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집합투자업자는 위 (나)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http://www.goldman-sachs.co.kr>),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들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게시가 되도록 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합니다.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가) 집합투자업자는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하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함)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이하 "자산운용보고서"라 합니다) 및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을 포함함)의 의결권 행사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1) 법 제8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투자중개업자의 평가 및 선정은 해당 분야에 따라 분기별로 이루어집니다.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증권거래	1) 지분증권거래 - 리서치자료제공, 거래 편의성 및 정확성, 기업방문 및 세미나, 공현도 등과 같은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됩니다. 2) 채무증권거래 - 시장점유율, 재무건전성, 호가제시만족도, 시장분석정보서비스등과 같은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됩니다.
장내파생상품거래	1) 지분증권관련장내파생상품거래 - 리서치자료제공, 거래 편의성 및 정확성 등과 같은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됩니다. 2) 채무증권관련장내파생상품거래 - 시장점유율, 재무건전성, 주문실행의 신속,정확성, 시장분석정보서비스등과 같은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됩니다.

【별첨1】본건 투자신탁과 관련한 이해상충의 일반적 분류

별첨 1에서 본건 투자신탁이라 함은 당해 투자신탁과 모투자신탁을 의미합니다.

본건 투자신탁과 관련한 이해상충의 일반적 분류

The Goldman Sachs Group, Inc.는 세계적인 종합 서비스 투자 은행이며, 브로커-딜러, 자산운용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요 참여자입니다. 이와 같이 The Goldman Sachs Group, Inc.는 투자자, 투자은행, 리서치 제공업자, 자산운용업자, 투자자문업자, 재무관리자, 자문업자, 시장 조성자, 고유계좌거래자, 프라임브로커, 대주(lender), 대리인 및 본인으로 행위하며, 본건 투자신탁이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글로벌 채권, 통화, 상품, 주식 및 기타 시장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본건 투자신탁의 운용, 판매, 투자활동, 사업운영 또는 판매에 종사하는 자를 모두 포함하여, The Goldman Sachs Group, Inc., Goldman Sachs의 자산운용부문, 집합투자업자 및 그 계열회사, 이사, 파트너, 수탁자, 매니저, 구성원 및 임·직원(본 “잠재적 이해상충”항의 목적상 총칭하여 “골드만삭스”라 함)들은, 본건 투자신탁의 운용 업무 외에 다른 업무 및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건 투자신탁은 이러한 업무들과 관련된 보수(compensation)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무 및 이해관계 중에는 본건 투자신탁 및 그 업무제공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매입 또는 매도하는 유가증권, 증서 및 회사들에 대한 잠재적인 다양한 자문, 거래, 재무 및 기타 업무와 같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수익자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고려사항에 해당하며, 이는 본건 투자신탁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본건 투자신탁을 적절하게 운용해야 할 자신의 의무에 따라 본건 투자신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반면, 상기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골드만삭스에 대한 수수료, 배정, 보상 또는 기타 이익(골드만삭스의 사업관계와 관련된 혜택 포함)은, 본건 투자신탁을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제공하는 특정 포트폴리오, 투자, 서비스공급회사 또는 기타 결정의 결과로, 본건 투자신탁에 대해 적절한 다른 결정을 내렸더라면 지급되었을 보수, 할당, 보상 또는 기타 이익 보다 클 수 있습니다.
- 골드만삭스, 그 판매인력 및 기타 재무서비스제공업자들은 그들이 판촉활동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본건 투자신탁의 판촉이나 기타 본건 투자신탁과의 기타 거래와 관련되어 서로 상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골드만삭스, 본건 투자신탁 및 골드만삭스가 운용하는 다른 펀드들 및 계좌들 간에 투자기회를 배정함으로써 골드만삭스 또는 그 인력의 재무 이익이나 기타 이익으로 인해 잠재적인 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는 오직 이러한 요소에 기초하여 투자기회 배정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본건 투자신탁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익이 된다고 믿는 바에 따라 본건 투자신탁을 위한 투자결정을 합니다. 본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결정은 골드만삭스나 다른 펀드 또는 계좌들에 대한 자문이나 투자결정과 상이하고 이와 상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펀드들 또는 계좌들은 본건 투자신탁이 매수포지션을 취했거나 취할 예정인 증권을 공매도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나 다른 펀드 또는 계좌와 관련하여 취한 조치들은 본건 투자신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건 투자신탁이 취한 조치들은 골드만삭스

또는 다른 펀드들이나 계좌들에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본건 투자신탁이 아니라 골드만삭스를 위하여 거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본건 투자신탁 역시 그러합니다.

- 골드만삭스의 인력은 이들이 판촉하거나 운용하는 다른 계좌 또는 상품과 비교하여 이러한 인력이 판촉하거나 운용하는 계좌 또는 상품에 대해 상이한 수준의 경제적 이해관계 및 기타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골드만삭스는 그가 소유하는 시장 또는 기타 정보, 분석, 기술적 모델 또는 리서치를 본건 투자신탁에 제공하거나 본건 투자신탁을 위해서 이에 따라 거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건 투자신탁은 골드만삭스가 본인으로 행위하거나 골드만삭스가 이러한 거래에 대해 본건 투자신탁 및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행위를 하는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거래와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집합투자업자가 이해상충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를 하게 된다면, 집합투자업자는 본건 투자신탁의 관련 포트폴리오를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집합투자업자는 서면화 된 이해관계상충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거래들이 당해 포트폴리오의 최상의 이익과 부합하며, 독립당사자 간의 통상적인 상거래 조건에 따라 시행된다면, 집합투자업자는 수시로 본인이나 대리인으로서 본건 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골드만삭스는 본건 투자신탁에 대해 브로커, 딜러, 대리인, 대주 등으로 행위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모든 수수료, 보수 및 기타 보상을 받습니다.
- 본건 투자신탁을 위해 거래되는 유가증권은 골드만삭스가 운용하는 다른 펀드 또는 계좌를 위한 거래와 통합될 수 있으나, 반드시 그와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가격이 적용될 수 없거나 또는 매수 또는 매도 대상 유가증권 전량에 대한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다양한 가격에 대한 평균 가격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본건 투자신탁은 평균가격으로 책정(charged)되거나 계상(credited)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통합이 본건 투자신탁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본건 투자신탁과 골드만삭스가 운용하는 다른 펀드 또는 계좌에 제공되는 중개서비스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브로커로부터 수령하는 상품 및 서비스는 본건 투자신탁 및 다른 펀드 및 계좌에 제공되는 상대적인 중개서비스 금액에 기초하여 다른 펀드 및 계좌에 불균형하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적절하다고 믿는 바에 따라, 그리고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집합투자업자의 방침에 따라 의결권대리행사를 결정할 수 있는 한편, 본건 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와 관련한 집합투자업자에 의한 의결권대리행사결정은 골드만삭스의 기타 고객 또는 다른 사업 부분이나 사업단위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
- 규제상 제한 (상이한 펀드 및 계좌 간의 포지션의 통합과 관련된 제한을 포함) 및 골드만삭스 내부방침은 본건 투자신탁의 투자활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본건 투자신탁의 투자활동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본 항에 명시된 활동과 별도로 골드만삭스의 현재 및 향후 활동들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래 투자자들은 이러한 내용 및 골드만삭스의 다른 사업 및 이해관계에 따라 제공되는 기타 잠재적 이해상충에 대해 더 상세히 기재하고 있는 다음 항을 주의깊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결정, 본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 및 투자기회의 배정과 관련된 잠재적 이해상충

골드만삭스의 다른 활동은 본건 투자신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집합투자업자는 본건 투자신탁의 운용사로서 그 의무에 따라 본건 투자신탁을 위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의 다른 활동은 본건 투자신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기 “본건 투자신탁과 관련한 이해상충의 일반적 분류”에 기재된 바와 같은 골드만삭스의 다양한 활동 및 이해관계의 결과로, 본건 투자신탁은 골드만삭스가 투자은행서비스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법인들과 다수의 사업관계를 가지고 투자하거나 거래를 체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본건 투자신탁은 또한 골드만삭스가 시장을 조성하거나 달리 기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증권에 대한 거래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가 본건 투자신탁을 적절히 운용할 의무에 따라 본건 투자신탁에 대한 결정을 하는 한편, 상기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골드만삭스에 대한 수수료, 배정, 보상 및 기타 이익(골드만삭스의 사업관계와 관련한 혜택 포함)은, 본건 투자신탁을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제공하는 특정 포트폴리오, 투자, 서비스공급회사 또는 기타 결정의 결과로, 본건 투자신탁에 대해 적절했을 다른 결정을 내렸을 경우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또는 중개회사들의 재무 및 기타 이해관계는 골드만삭스 또는 중개회사들의 본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촉활동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음.

- 골드만삭스, 그 인력 및 기타 금융서비스공급회사들은 본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 촉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그 인력에 대하여 본건 투자신탁이나 기타 상품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판매와 관련되는 보상 및 수익은 제공되거나 모집될 수 있는 특정 펀드 다른 상품에 대한 서비스 및 판매와 관련된 보상 및 수익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 판매 관련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그 판매인력은 본건 투자신탁이나 그 수익자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보상이나 수수료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및 그 자문인력이나 기타 인력은 또한 운용자산규모의 증가로 인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는 또한 일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보다 높을 수 있으며, 본건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거래들이나 본건 투자신탁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골드만삭스 및 그 인력에 대한 보상 및 수익은 다른 펀드들이나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상 및 수익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로 인하여 본건 투자신탁에게 부과되거나 본건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가 증가하거나 보수가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골드만삭스 및 인력은 비계열투자자문회사가 자문을 제공하는 계좌와 관련되는 것보다 골드만삭스가 자문사로 행하는 계좌와 관련하여 더 큰 보상 또는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상의 차별성은 골드만삭스가 비계열투자자문회사에게 일부 자문보수를 지급하거나 포트폴리오 운용, 위

판매매나 계좌관리서비스를 포함하여 다른 보상약정에 대해 자문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됩니다. 보상의 차별성으로 인해 비계열투자자문회사보다 골드만삭스를 추천하거나 다른 계좌에 비하여 어느 한 계좌에서 거래들을 다르게 실행하는 일부 골드만삭스 및 그 인력에 대해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골드만삭스는 또한 본건 투자신탁을 추천하거나 본건 투자신탁과의 거래에 관여하는 판매회사, 컨설턴트나 기타 사람들과 관계를 갖거나 이들로부터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를 제공,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는 업계 및 컨설턴트 후원 컨퍼런스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그 인력 및 그 사업에 가치가 있다고 간주되는 컨설턴트나 기타 제3자로부터 교육 서비스, 데이터 관련 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로부터 제공받은 상품 및 서비스는 골드만삭스가 투자운용절차에 대한 컨설턴트의 관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컨설턴트 및 본건 투자신탁의 장래 투자자에 대한 컨설팅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당사자는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건 투자신탁의 수익권 또는 기타 골드만삭스의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골드만삭스 또는 본건 투자신탁으로부터 보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는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공하거나 운용하는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컨설턴트, 서비스제공자 및 기타 중개회사와 수입 또는 수수료 공유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또한 업계 전반 또는 주 및 지방자치조직의 회원비를 지불하거나 달리 신탁자, 수탁자, 컨설턴트, 일반사무관리회사, 주 및 지방자치조직 직원들 및 기타 고객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투자업계 참여자를 위하여 스폰서 컨퍼런스 및 교육 포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에서 골드만삭스의 회원 지위는 골드만삭스가 이러한 컨퍼런스 및 교육 포럼에 참여하고, 골드만삭스가 컨퍼런스 참여자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며, 컨퍼런스 참여자들의 시각과 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 직원들을 포함한 골드만삭스의 인력은 발행인, 판매회사, 컨설턴트 및 기타 본건 투자신탁에 투자를 하거나 본건 투자신탁에의 투자를 권유하거나 본건 투자신탁을 판매할 수 있는 자들과 위원회, 자문, 중개 또는 기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하여 골드만삭스는 고객 또는 고객의 인력과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하여, 기관에 대해 자선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인력은 또한 정치적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동 항에 기재된 관계 및 약정의 결과로, 컨설턴트, 판매회사 및 기타 당사자들은 본건 투자신탁의 판촉이나 특정 포트폴리오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본건 투자신탁의 판촉 또는 본건 투자신탁과의 기타 거래에 수반되는 상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골드만삭스 또는 집합투자업자는 본건 투자신탁, 고객/GS계좌(하기 정의됨) 및 기타 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수시로 수권 딜러 및 기타 금융중개회사(“중개회사들”)에 금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모집보수, 판매수수료 또는 이와 유사한 판매대행보수에 추가하여 이러한 지급금은 본건 투자신탁, 고객/GS계좌 또는 기타 상품에 별도로 부과되기보다는 골드만삭스의 자산이나 골드만삭스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부터 지불됩니다. 이러한 지급금은 다른 무엇보다도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중개회사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본건 투자신탁, 고객/GS계좌 및 다른 상품의 마케팅(포트폴리오, 고객/GS계좌 및 다른 상품을 우선/추천펀드목록이나 수시로 중개회사들이 후원하는 특정 판매프로그램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이와 관련되는 지급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 및 기타 회의 등에서 중개회사의 등록된 대표자 또는 영업인력과의 만남, 연수 및 교육 지원, 투자자들에게 본건 투자신탁, 고객/GS계좌 및 다

른 상품을 소개하는 대가인 “중개수수료(finders)” 또는 “소개수수료(referral fees)”, 본건 투자신탁, 고객/GS계좌 및 다른 상품의 판촉을 지원하는 대가인 마케팅 지원 수수료(여기에는 중개회사들의 고객, 등록된 대표자 및 영업인력과의 통신 판촉 활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및/또는 본건 투자신탁, 고객/GS계좌 및 기타 상품의 판매 및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의도된 기타 특정 서비스. 이러한 지급금은 고정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중개회사가 유지하는 고객계좌수를 기초로 할 수도 있으며, 해당 중개회사 관련 고객들에게 판매되거나 또는 이들이 보유하는 지분가치 비율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기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금은 또한 적용 규정 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판매 컨테스트 및/또는 판촉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특정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비현금/현금 인센티브 협정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용법률을 전제로 이러한 지급금은 또한 교육, 영업 및 판촉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중개회사들 및 그 영업인력 및 거래처들의 출장비, 식대, 숙박비 및 접대비에도 충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추가적인 지급을 통해 이러한 상품으로부터 서비스를 위해 지급되는 보수에 추가하여 하위계좌화 관련 업무(sub-accounting), 일반사무관리 및/또는 주주 및 기타 투자자에 대한 업무처리서비스를 위해 중개회사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본건 투자신탁과 기타 골드만삭스 계좌들 간의 투자기회의 배정과 관련한 잠재적인 이해상충

- 골드만삭스 또는 그 인력(집합투자업자의 인력을 포함)이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을 비롯하여 골드만삭스는 본건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 또는 거래 결정의 배정과 관련하여 잠재적 상충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본건 투자신탁은 골드만삭스(집합투자업자 포함)가 운용/자문하거나 골드만삭스(집합투자업자 포함) 또는 그 인력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현재나 장래의 계좌들이나 펀드들(총칭하여 “고객/GS계좌”)과 투자기회에 대해 경쟁 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GS계좌들은 골드만삭스(집합투자업자를 포함)에 성과기반보수, 주식, 기타 이익 등 더 큰 보수 또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골드만삭스는 본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과 유사한 투자목적은 가지는 고객/GS계좌를 운용하거나 자문할 수 있으며, 그리고/또는 본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이나 기타 증서, 분야 또는 전략에 대한 투자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이러한 투자자산의 이용가능성이나 유동성이 제한되는 경우, 본건 투자신탁과 다른 고객/GS계좌간에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가능성이 제한되는 상황은 신흥시장, 고수익 유가증권, 채권형 유가증권, 규제산업 및 IPO/신규발행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수의 고객/GS계좌들(골드만삭스 및 그 인력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계좌들을 포함), 골드만삭스의 다른 고객들 또는 골드만삭스 자체에 의한 투자 거래는, (본건 투자신탁을 비롯하여) 특히 소규모 자본화, 신흥시장 또는 덜 유동적인 전략에 있어서 고객/GS계좌들이 보유한 유가증권과 관련한 가치, 가격 또는 투자전략을 희석하거나 또는 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재량과 각 고객/GS계좌에 대한 선관의무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방식으로 본건 투자신탁과 기타 고객/GS계좌들간에 투자기회들을 배정하고 매수 및 매도 결정을 내리기 위한 방침들과 절차들을 개발하였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방침들은 고객/GS계좌들 전반에 걸쳐 제한된 투자기회들을 비례 배분하도록 하지만, 다른 많은 경우에 배분은 집합투자업자의 각 고객/GS계좌의 목적, 제한 및 요건과 비교하여 제한된 투자기회들을 최선으로 활용하는지를 집합투자업자가 선의로 평가하는 것에 기초한 수많은 다른 요소들을 반영하며, 아래 기재된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을 적용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계좌 관리와 관련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모든 고객들을 합리적으로 대우하고자 하며, 어떤 경우에는 아래 기재된 요소들을 적용하여 특정 계좌들이 다른 계좌들이 받지 못하는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합

니다. 비례에 따르지 않은 배분은 많은 주식형 계좌에서보다도 채권(고정수익) 포트폴리오 운용 영역에서 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이는 벤치마크 요소들, 헷지전략들의 상이함이나 기타 이유 때문이며, 채권(고정수익)전략에 있어서 복수의 적절한 또는 현저하게 유사한 투자자산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례에 따르지 않은 배분이 다른 영역에서도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재된 요소들의 적용으로 골드만삭스 및 그 직원들이 다른 고객/GS계좌들(본건 투자신탁 포함)에게 배분되지 않은 배분이나 투자기회를 수령하도록 하는 배분이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배분은 다양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항상 운용 자산에 따라 비례하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들은 다양한 요인들에 대하여 배분관련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i) 계좌투자한도, 투자 목적 및 지침, (ii) 다양한 전략들을 위한 다양한 수준의 투자, (iii) 공매도 또는 기타 기법을 통한 헤지 능력 포함한 고객별로 특화된 투자지침 및 제한, (iv) 해당 고객/GS 계좌들의 예상 장래 능력; (v) 전적인 지시에 따르는 위탁매매계좌, (vi) 계좌들의 조세민감성, (vii) 적합성 요건 및 투자기회의 성질, (viii) 계좌 거래회전을 지침, (ix) 투자를 위한 현금의 이용가능성, (x) 해당 계좌의 상대적인 규모 및 장래 예상 규모, 및/또는 (xi) 기타 적절한 투자기회들의 이용가능성 및/또는 (xii) 최소 액면가, 최소추가투자금액, 최소투자금액 및 거래단위(round lot) 고려사항을 고려하여 본건 펀드들과 기타 고객/GS계좌들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의 고려사항은 (i) 다른 계좌에 대한 상대적 투자기회 매력, (ii) 계좌에 대한 포지션 집중, (iii) 벤치마크에 대한 기회의 적정성 및 계좌의 벤치마크 민감도, (iv) 계좌의 위험감수도, 위험변수 및 전략 배정, (v) 골드만삭스가 해당 계좌를 위한 투자매력이 있다고 여기는 증권이나 증서로의 교체 기회 활용, (vi) 조별방식의 거래(pair trade)에 대한 포지션 헷지와 관련되는 고려사항 및/또는 (vii) 계좌를 업계에 일부 노출하는 것과 관련되는 고려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 어느 한 고객/GS계좌에 대한 골드만삭스 또는 그 인력의 이해관계로 인해, 또는 골드만삭스가 다른 고객/GS계좌와 관련하여 어느 한 고객/GS계좌의 배정으로부터 더 큰 보수나 보상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본건 투자신탁 및 기타 고객/GS계좌 간에 투자기회의 배정으로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을 지라도 집합투자업자는 이러한 이해관계나 더 큰 보수나 보상에 기초하여 배정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 계좌들간의 배정 결정은 어느 한 계좌나 계좌 그룹에 대해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 기회, 전략들이나 특정 매수나 매도가 본건 투자신탁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이상의 고객/GS계좌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나 계열회사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또는, 규모, 거래조건이나 시기를 고려할 때 다른 고객/GS계좌들 보다는 본건 투자신탁에게 적합하거나 가능한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고객/GS계좌에 대해 적격한 모든 투자거래를 고객/GS계좌들에게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고객/GS계좌들을 위하여 매수 또는 매도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의 투자금액, 시기, 구조 또는 조건은 기타 고객/GS계좌의 투자자산 및 성과와는 상이할 수도 있으며, 성과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의 본건 투자신탁 운용과 관련한 기타 잠재적 이해상충

골드만삭스가 보유하는 정보와 관련한 잠재적 제한 및 문제점

- 골드만삭스의 서로 다른 사업부들 간에 정보차단벽이 구축되어 있는 결과로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며, 골드만삭스의 다른 분야의 인력과의 논의가 가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본건 펀드들을 운용할 때 골드만삭스의

다른 사업부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시로 그리고 정보차 단벽에 관한 관련 법률 및 집합투자업자의 방침과 절차를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집합투자업자는 골드만삭스의 다른 분야의 인력 또는 골드만삭스와 연결되지 않은 자와 상담하거나 이러한 인력으로 구성된 투자방침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인력과의 협의에 관련된 사람들의 의무 이행은 골드만삭스 내 또는 다른 곳에서의 주요 책임분야와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집합투자업자와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들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집합투자업자의 장래 본건 투자신탁의 투자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고객활동, 고유활동 또는 기타 활동에 관련되어 이들이 알고 있거나 이들에 의해 개발된 정보 또는 전략을 본건 투자신탁을 위해 사용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공개 배포 전 리서치나 분석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본건 투자신탁의 투자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본건 투자신탁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시로 골드만삭스 및 그 인력이 개발한 특정 펀더멘탈 분석 및 고유의 기술적 모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분석 및 모델에 따라 본건 투자신탁을 위한 거래를 실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또한 골드만삭스는 정보를 구하거나 기타 고객 또는 활동과 관련되어 골드만삭스 인력에게 알려져 있거나 인력에 의해 개발되거나 사용되는 정보, 투자전략, 기회 또는 아이디어를 본건 투자신탁을 위해 사용하거나 또는 공유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인력 또는 본건 투자신탁에 대해 자문하거나 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골드만삭스 인력을 포함하여, 골드만삭스 및 그 특정 인력은 모든 골드만삭스 인력이 활용가능하지 않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인력은 본건 투자신탁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행위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및 다른 계좌들이 고유계좌 또는 다른 계좌를 위해 거래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기간 동안 포트폴리오 또는 고객/GS계좌들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골드만삭스는 수시로 중요한 미공개정보 또는 본건 투자신탁이 투자자산을 매수 및 매도하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건 투자신탁의 투자유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본건 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증권거래의 매수 및 매도를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일이 금지됩니다.
- 골드만삭스는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브로커-딜러, बैं킹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프라임 위탁매매, 일반사무관리 및 기타 업무들을 본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시장 및 유가증권과 연관되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일명 골드만삭스증권서비스("GSS")로 알려져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을 통하여 GSS 및 기타 골드만삭스의 다른 사업부문들은 특정 시장들, 투자자산들 및 투자신탁들의 현황 및 투자신탁 운영업자들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전반적으로 입수할 것입니다. 본 문단에 기재된 활동 및 이러한 활동들로부터 연유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지식의 입수 결과 골드만삭스의 일부 사업부문들은 시장, 투자자산 및 투자신탁들에 대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가 집합투자업자에게 알려지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어느 포트폴리오가 보유하는 투자자산을 처분, 보유하거나 이해관계를 증진하거나 혹은 포트폴리오를 대신하여 특정 포지션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특히 포트폴리오를 대신하여 투자결정을 내리는 집합투자업자의 인력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어떠한 의무도 없습니다.

골드만삭스 및 집합투자업자의 고유 활동 및 다른 계좌를 위한 활동과 관련한 잠재적 이해상충

- 본건 투자신탁 투자활동의 결과는 골드만삭스가 그 고유계좌를 위해 달성한 성과 및 골드만삭스가 다른 고객/GS계좌를 위해 달성한 성과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각 투자 목적 및 지침에 따라 본건 투자신탁 및 그들이 운용하는 다른 고객/GS계좌를 운용합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현재나 장래의 고객/GS계좌에 대하여 투자수익과 투자와 관련된 행동의 시기나 특징, 기존투자 방식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본건 투자신탁에 제공한 자문과 상반되거나 상충하는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골드만삭스 또는 고객/GS계좌가 기도하는 거래가 본건 투자신탁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및 하나 이상의 고객/GS계좌는 본건 투자신탁이 동일하거나 또는 상이한 전략(반대인 경우를 포함)을 취하고 있는 포지션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으며, 이는 본건 투자신탁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건 투자신탁은 유가증권을 매수하고, 골드만삭스 또는 고객/GS계좌는 동일한 유가증권에 대해 매도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위이은 공매도는 본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포트폴리오는 유가증권에 대해 매도포지션을 취할 수 있으며, 골드만삭스 또는 기타 고객/GS계좌들은 동일한 유가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위이은 매수는 본건 투자신탁의 공매도 익스포저의 기초 포지션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가격의 상승은 본건 투자신탁에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 본건 투자신탁과 관련한 포트폴리오 결정이 골드만삭스 또는 다른 고객/GS계좌들에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에 의한 매수포지션의 판매 또는 매도포지션의 설정은 골드만삭스 또는 다른 고객/GS계좌들에 의해 공매되는 동일한 증권의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골드만삭스 또는 다른 고객/GS계좌에게는 이익이 됩니다). 포트폴리오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또는 유가증권의 매도포지션의 환매수는 골드만삭스 또는 다른 고객/GS계좌들이 보유하는 동일한 유가증권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골드만삭스 또는 다른 고객/GS계좌에 이익이 됩니다).
- 또한, 하나 이상의 고객/GS계좌 및 골드만삭스가 행한 어느 투자자산의 거래는 본건 투자신탁의 가치, 가격 또는 투자전략(특히 소형주, 신흥시장 및 비유동적 전략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희석시키거나 달리 불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는 본건 투자신탁과 관련한 포트폴리오 결정이 다른 고객/GS계좌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사용되는 리서치 또는 기타 정보를 근거로 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또는 고객/GS계좌가 본건 투자신탁을 위한 유사한 포트폴리오 결정 또는 전략(포트폴리오 결정이 동일한 리서치 분석이나 기타 정보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에 앞서 또는 동시에 포트폴리오 결정이나 전략을 실행할 때 시장영향, 유동성 제약 또는 기타 요소로 인해 본건 투자신탁은 유리하지 않은 거래 성과를 얻을 수 있고, 포트폴리오 결정 또는 전략을 실행하는 비용이 증가되는 등 본건 투자신탁이 달리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에 골드만삭스는 고객/GS계좌들에 미치는 이러한 결과를 제한시키기 위한 내부 방침 및 절차의 도입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본건 포트폴리오가 유가증권의 매수나 처분을 포함하여 특정 활동에 관여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 이러한 특정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하여 골드만삭스의 이사 및 임직원은 자신의 고유 계정(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하여 골드만삭스가 운용하는 투자펀드들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유가증권이나 기

타 투자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사, 임직원은 상이한 거래 및 투자전략, 또는 제약으로 인해 본건 투자신탁을 위한 포지션과 동일하거나 상이한 포지션을 취하거나 상이한 시점에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본건 투자신탁이 이러한 개인 거래에 의해 크게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각 집합투자업자 및 골드만삭스는 펀드의 포트폴리오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정보를 소유하는 투자전문가들 등이 개인 계정을 통하여 유가증권 거래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침 및 절차를 수립하였습니다. 각 집합투자업자 및 골드만삭스는 집합투자업자가 이러한 인력, 즉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고객/GS계좌 및 본건 투자신탁과 관련되는 잠재적 상충을 수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인력에 의한 특정 개인유가증권거래와 관련한 윤리강령(총칭하여 “윤리강령”) 및 감독 절차를 채택하였습니다. 윤리강령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의 인력은 모든 적용되는 법규 및 집합투자업자에 적용되는 모든 선관 의무 및 시장남용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골드만삭스의 고객(고객/GS계좌를 포함)들은 고객 보고서 수령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들의 인력들이 관리하는 계좌들이 아닌 고객 거래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합투자업자의 거래 또는 시각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들은 본건 투자신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투자신탁은 다른 고객/GS계좌들의 자본금 증가 및 자본금 인출 뿐만 아니라 매수 및 매도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 및 시장 움직임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거래가 적고 유동성이 적은 시장에서 더 강조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본건 투자신탁 운용은 골드만삭스에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건 투자신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골드만삭스와 계열관계이거나 골드만삭스가 지분, 채무관계나 기타 이해관계를 가지는 회사들의 유가증권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본건 투자신탁은 다른 고객/GS계좌들의 채무가 해소되거나 투자를 회수하거나 본건 투자신탁이 특정 투자자산을 회수하여야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투자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본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자산의 매입, 보유 및 매도는 이러한 회사들에 대한 골드만삭스 또는 다른 고객/GS계좌의 고유 투자자산 및 그 활동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골드만삭스와 하나 이상의 고객/GS계좌(본건 투자신탁 포함)은 또한 동일 발행인의 다양한 등급의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 이상의 고객/GS계좌는 본건 투자신탁이 투자한 특정 발행인에 대하여 권리 실행을 모색하거나 권리를 실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이 본건 투자신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GS계좌가 발행인의 채무성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본건 투자신탁은 동일 발행인의 주식형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발행인이 재무상 또는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주식형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포트폴리오가 발행인의 회사정리(reorganization)를 선호하는 반면, 채무성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고객/GS계좌는 발행인의 청산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또한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 이상의 고객/GS계좌(본건 투자신탁 포함)를 대신하여 공동으로 특정 발행인에 대하여 권리를 모색하거나 실행할 수 있으며, 또는 골드만삭스 직원들은 이러한 권리를 모색하거나 실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본건 투자신탁은 골드만삭스 및 다른 고객/GS계좌의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본건 투자신탁을 위한 거래는 골드만삭스 및 다른 고객/GS계좌가 유가증권의 발행인에 대하여 특정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을 경우의 가격이나 조건보다 더 유리하지 않아 손해를 입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력은 다른 고객/GS계좌의 운용에 중요한 발행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본건 투자신탁을 대신하여 발행인의 유가증권을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골드만삭스는 본건 투자신탁이나 기초유가증권, 통화 또는 증서에 대한 파생상품 또는 달리 본건 투자신탁의 성과에 기초할 수 있는 파생상품을 설정, 인수, 매도, 발행하거나 또는 파생상품의 모집대리인이나 판매회사로서 행할 수 있습니다(이하 통칭하여 “구조화투자상품”이라 함). 구조화투자상품의 가치는 포트폴리오의 순자산가치 및/또는 포트폴리오의 투자자산의 가치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골드만삭스(그 인력 또는 고객/GS계좌 포함)은 본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있고, 본건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함으로써 파생포지션을 헷지할 수 있고, 수익자들에 대한 통지 없이 언제든지 그 투자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매할 권리를 가집니다. 구조화투자상품과 관련하여, 그리고 헷지, 자산재조정(re-balancing) 및 기타 목적을 위하여 고객/GS계좌들은 포트폴리오가 보유하는 투자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의 투자자산의 성과를 모방하거나 또는 헤지하고자 하는 합성포지션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지션들은 포트폴리오 포지션과 다를 수 있으며 그리고/또는 그에 반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투자는 판매수수료나 기타 보수나 수수료의 대상이 아닌 클래스를 포함하여 포트폴리오의 수익권 클래스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수익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에 대한 주주의 지분에 대한 질권설정을 통하여 안전이 확보된 유사한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골드만삭스는 만일 동 주주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을 환매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거래들과 관련 환매는 중요할 수 있으며, 수익자들에 대한 통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구조 기타 성격은 본건 투자신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생상품은 본건 투자신탁의 레버리지 투자를 나타낼 수 있으며, 투자의 레버리지 성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 또는 다른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다른 경우보다 더 빠르게 본건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대규모 환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상업적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골드만삭스는 사실상 이러한 환매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본건 투자신탁의 투자운용 및 포지션, 유연성 및 분산전략 및 본건 투자신탁의 계좌를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보수, 경비 및 기타 비용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골드만삭스(그 인력 또는 고객/GS계좌 포함)는 본건 투자신탁에 투자할 수 있고, 본건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함으로써 파생포지션을 헷지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투자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매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투자 및 환매는 중요할 수 있으며 수익자들에 대한 통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자문하거나 운용하는 허용된 투자신탁(Permitted Investment Trusts)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잠재적 이해상충

-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본건 투자신탁은 골드만삭스가 자문하거나 운용하는 하나 이상의 투자신탁들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투자와 관련하여, 본건 투자신탁은 룩셈부르크 법률 및 관련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신탁의 모든 비용(투자자문 및 관리 보수 및 청약 및 환매 수수료 (있는 경우)) 중 자신의 몫을 지급하며 이로 인하여 포트폴리오는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즉, 골드만삭스가 포트폴리오 및 본건 투자신탁의 운용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므로 당해 투자와 관련한 “이중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의 기준 투자자산의 직접 매입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여하한 수수료 또는 기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여하한 형식의 보상을 수령하는 모든 기타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는 본건 투자신탁에 대한 어떠한 회계 또는 환매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브로커 및 딜러 선정과 관련한 잠재적 이해상충

- 집합투자업자는 본건 투자신탁을 대신하여 최선의 체결로 거래를 이행할 브로커 및 딜러를 선정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증가율 및 기타 거래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최상의 가격은 통상적으로 본 결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나 브로커 및 딜러의 선정시 체결 능력, 자본납입 의사,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 재무 지급능력 및 리서치 제공 의사 및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이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 중개업의 수준 및 결제 능력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본건 투자신탁을 대신하여 이행되는 거래는 항상 최저 가격 또는 최저 수수료로 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부조달(In-Source) 또는 외부위탁(Outsource) 할 수 있음.

- 관련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 골드만삭스는 수시로, 그리고 수익자들에 대한 통지 없이 그 일반사무관리자 또는 기타 자격으로 본건 투자신탁에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관련한 특정 절차들이나 기능을 내부 조달 또는 외부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조달 또는 외부 위탁이 추가적인 이해상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본건 투자신탁에 대한 집합투자업자 자격이 아닌 다른 자격으로 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상충

당사자 거래 및 본인 거래와 관련되는 잠재적 이해상충

- 적용 법규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건 투자신탁은 주체(principal)로서 또는 그 고객을 위해 자기의 계산으로 (proprietary basis) 행위하는 골드만삭스가 거래상대방으로서 선물, 유가증권, 통화, 스왑, 옵션, 선도계약이나 기타 증서에 투자하거나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본건 투자신탁은 또한 골드만삭스가 본건 투자신탁을 대리하고 거래 상대방을 위하여 행하는 자전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자전거래의 양 당사자들에 대해 서로 상충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는 본건 투자신탁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본건 투자신탁과 다른 고객/GS계좌 또는 거래 상대방 측의 계좌 모두를 대리할 수 있으며 골드만삭스는 한 당사자 또는 양당사자로부터 보수(compensation)나 기타 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본건 투자신탁으로 하여금 이러한 유가증권을 매수하도록 한 골드만삭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건 투자신탁은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오직 고객/GS계좌를 대신하여 골드만삭스나 그 계열사와 함께 당사자거래나 자전거래만 할 것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본건 투자신탁을 위하여 영리 목적의 역할(commercial capacity)로 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상충

-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골드만삭스는 본건 투자신탁을 위하여 브로커, 딜러, 대리인, 대주(lender) 또는 자문인, 또는 기타 영리적 목적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부과하는 수수료, 가격인상(mark-up), 가격하락(mark-down), 금융자문수수료, 인수 및 모집수수료, 판매보수, 파이낸싱 및 약정 수수료, 중개보수, 기타 보수, 보상 또는 수익, 이윤, 제반 조건은 판매 인력을 포함하여 골드만삭스가 골드만삭스 및 판매인력에게 유리한 보수 및 기타 금액을 획득하는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상업적으로 그 시각상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집합투자업자 외의 자격으로 행하는 경우 보수(compensation)를 받을 수 있으며, 본건 투자신탁은 이러한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 법률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

여 골드만삭스(및 그 인력 및 기타 판매회사)는 본건 투자신탁에 대하여 브로커, 딜러, 대리인, 대주(lender), 자문인 또는 기타 상업적 자격으로 업무를 제공하는 일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보수 및 기타 금액을 보유할 권한을 가지며, 본건 투자신탁이나 그 수익자들에 대하여 이를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본건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들에 의해 지급되어야 하는 보수나 보상은 골드만삭스가 위와 같은 보수나 기타 금액들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감소되지 않습니다. 본건 투자신탁은 본건 투자신탁이 참가하고자 하는 주식대차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신탁은 독립기업기준으로 투자자문회사의 계열회사를 유가증권 대차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본건 투자신탁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투자제한의 규정 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위임인이 단독 재량으로 결정한 바에 따라 골드만삭스와 협의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율 및 기타 조건에 따라 골드만삭스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 골드만삭스가 본건 투자신탁과 관련하여 브로커, 딜러, 대리인, 대주(lender), 자문인 또는 기타 상업적 자격으로 행할 때, 골드만삭스는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상업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본건 투자신탁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라임 중개 또는 본건 투자신탁을 포함하는 대차약정과 관련하여 골드만삭스는 언제든지 또는 수시로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건 투자신탁은 자체 신용상태를 근거로 하여 거래상대방들과의 사업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하여 골드만삭스는 본건 투자신탁의 사업관계 설정과 관련하여 골드만삭스의 신용을 이용하도록 할 의무가 없으며, 본건 투자신탁의 거래상대방들이 본건 투자신탁의 신용도를 평가함에 있어 골드만삭스의 신용을 신뢰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위탁매매 및 의결권대리행사와 관련한 잠재적 이해상충

-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본건 투자업자를 위한 유가증권의 매입 및 매도는 다른 고객/GS계좌에 대한 주문과 합산하거나 통합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와 그 계열회사들은 상이한 계좌들에 대한 투자 운용 결정이 별도로 이루어지거나 합산이나 통합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나 지시를 필요로 하거나 지시가 있는 계좌들에 대하여 주문을 합산하거나 통합하도록 요구되지 않습니다.
- 실제 거래 활동의 결과로 종종 매수 또는 매도 대상 유가증권의 전량에 대해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거나 동일한 거래체결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양한 가격에 대한 평균 가격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본건 투자신탁에 대해서 평균가격이 자산에서 차감(charged)되거나 자산에 계상(credited)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통합은 일부 경우에 본건 투자신탁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상황 하에서는 합산 또는 통합주문과 관련해 수수료 또는 수수료에 상응하는 이율이 동일하게 본건 투자신탁에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제한도 없이 다른 어떠한 요소들 중에서도 시간대의 차이, 개별적인 거래데스크 또는 글로벌 조직에서의 포트폴리오 운용절차는 개별적이면서 통합되지 않는 체결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 본건 투자신탁, 다른 고객/GS계좌 또는 그 계열회사 또는 인력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거래관계(correspondent relationship)를 통해 집합투자업자의 관점에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결정절차(선물, 고정가격모집 및 장외거래와 관련한 사항 포함)에 있어서 적절한 지원, 고유 리서치(proprietary research) 또는 기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로커(집합투자업자의 계

열회사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서치 또는 기타 서비스는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 산업 및 유가증권에 대한 리서치보고서, 경제 및 재무자료, 재무공시, 대리권분석, 거래산업세미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호가장비 및 서비스 및 리서치 기반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기타 서비스 및 상품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입수한 리서치 또는 다른 서비스는 리서치나 기타 서비스 약정과 관련하여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자를 제외한 고객/GS계좌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모든 본건 투자신탁 및 다른 고객/GS계좌에 관한 서비스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상품 및 서비스는 본건 투자신탁 및 다른 고객/GS계좌가 지불하는 위탁매매수수료의 금액에 기초하여 본건 투자신탁에 비해 다른 고객/GS계좌에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1인 수수료를 통해 지불된 리서치 또는 기타 서비스는 그 고객의 계좌를 운용하는데 활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고객/GS계좌는 차별적인 혜택을 포함하여, 본건 투자신탁과 다른 고객/GS계좌들에 제공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규모의 경제 또는 가격 할인에 따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해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브로커-딜러가 제공하는 거래체결, 청산 및/또는 결제서비스와 통합된 리서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이에 기초하여 리서치를 제공받으면, 전통적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많은 동일한 상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서치는 브로커-딜러가 제공하는 거래체결, 청산 및 결제서비스에 대한 지급을 하는데 사용되는 고객 수수료로 효율적으로 지불되며, 집합투자업자들이 지불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결정과정에서 유용하다고 믿는 리서치 또는 기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기 위해 이러한 약정에 의거하여 리서치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로커를 통해 거래를 체결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다양한 정도로 상기 기재된 약정을 맺지 않기로 수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본건 투자신탁을 포함하여 자문대상고객을 대리하여 내리는 의결권 대리행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이러한 결정이 고객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선관 의무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침 및 절차를 채택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결권 대리행사 방침 및 절차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실제 의결권대리행사결정은 기타 고객의 이익 또는 골드만삭스 및/또는 그 계열회사의 사업부문 또는 기타 사업단위의 업무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이러한 의결권 대리행사 결정이 그 선관 의무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활동에 대한 잠재적인 규제적 제한

- 본건 투자신탁의 활동은 수시로 골드만삭스에 적용되는 규제적 요건 및/또는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고안되거나, 달리 이러한 요건과 관련되는 내부 방침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로부터 자문을 받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이러한 고려사항 중 어떤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특정 유형의 거래를 착수하거나 또는 권고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골드만삭스가 투자은행서비스, 시장조성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를 이행하거나 고유 포지션을 가지는 회사가 발행하거나 동 회사와 관련되는 특정 유가증권 또는 증서에 대한 자문을 제한하거나 한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가 어느 회사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판매 또는 회사를 위한 자문서비스에 관여할 때, 본건 투자신탁은 동 회사

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일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인력이 본건 투자신탁이 매수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이사로 재임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자문업무와 골드만삭스의 사업이 확장될 수록 이러한 제한된 방침이 투자거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만일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 본건 투자신탁은 동 회사가 발행하거나 골드만삭스의 인수, 판매 또는 자문업무의 대상이거나 골드만삭스 인력이 해당 발행인의 이사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 유가증권 또는 증서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 골드만삭스의 고유 계정 및 고객/GS계좌를 위한 골드만삭스의 투자활동은 또한 본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들과 권리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제산업에 있어서, 특정 신흥시장 또는 국제시장에서, 법인소유 및 규제 소유 정의에서, 그리고 특정 선물파생상품 거래에 있어 인허가나 기타 규제당국이나 법인 동의 없이는 초과할 수 없는 계열 수익자들의 총 투자액이 제한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골드만삭스, 본건 투자신탁 또는 기타 고객/GS계좌가 불이익을 받거나 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정 총 소유한도액에 도달하거나 특정 거래를 이행하는 경우, 고객(본건 투자신탁 포함)을 대리하여 투자자산을 매수, 처분하거나 권리를 행사하거나 사업 거래에 착수할 수 있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은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달리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투자자산은 평판위험을 야기시키거나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고객(본건 투자신탁 포함)을 대리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자신의 재량으로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매수를 제한하거나 기존 투자자산의 매도하거나 달리 권리의 행사(의결권포함)를 제한하거나 한정시킬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인 및 그들 각자의 계열회사들은 각각 수시로 기타 본건 투자신탁과 유사한 투자 목적을 가진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투자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판매회사, 신탁업자, 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적절한 경우)로 행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회사들은 사업 과정에서 본건 투자신탁과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첨2]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때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당해 투자신탁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 [주식]
모투자신탁	골드만삭스 코리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모자형집합투자기구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수익권	투자신탁에 대한 이권으로서 이에 대한 권리를 포함합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신탁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말합니다.
영업일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당해 투자신탁과 관련하여 투자신탁의 일반사무관리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행위인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인 골드만삭스자산운용주식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법 제238조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설립한 위원회를 말합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같은 집합투자기구에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주식형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60%를 초과하여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법 시행령 제240조 제2항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법 시행령 제240조 제2항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용 어	내 용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판매회사	당해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